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 뉴질랜드
1994년 1월 3일

E/C.12/1993/13.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CESCR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고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뉴질랜드

1. 위원회는 1993년 11월 23일, 24일에 개최된 제24차, 제25차, 제26차 회의에서 협약 제1조-제15조에 관한 뉴질랜드, 토케라우, 니우에의 최초 보고서 (E/1990/5/Add.5, 11 and 12)를 논의하였으며, 1993년 12월 3일에 개최된 제40차 회의(제9차 회기)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평가를 채택하였다:

가. 서론

2. 위원회는 1990년에 제출한 포괄적인 보고서에 대하여 뉴질랜드 정부에게 감사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보고서의 논의를 2 회기를 연기한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보고서 제출과 위원회의 논의 기간 사이에 뉴질랜드의 정책과 법률에 대한 주요 변경이 발효되었고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현재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3. 위원회는 따라서 보고서를 갱신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추가 문서 정보 제공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당사국과 논의하기 전에 갱신된 정보를 받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4.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가 제기한 문서 및 구두 질문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 당사국 대표의 상당한 노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나. 공정적 측면

5. 위원회는 1971년의 인종관계법과 1977년 인권위원회법을 수정, 통합하여 유엔 인권 협약과 규약에 부합하는 뉴질랜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1993년 인권법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6. 위원회는 인권위원회의 의무조항 개정과 1993년 인권법 범위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위원회는 동 법의 근거로서 연령을 혁신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에 특별히 찬사를 보냈다.

7. 위원회는 1993년 고용보건안전법의 제정과 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1972년의 남녀평등임금법의 엄격한 이행을 위한 노력 활성화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8. 위원회는 초등, 중등, 고등전문 수준의 교육체계를 청소년 특히 직업훈련과 산업기술훈련에 청소년의 참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재조정하기 위한 당사국의 프로그램을 언급하였다.

9. 위원회는 협약 제8조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졌던 1987년의 노동관계법을 개정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의무교육 연한이 16세로 증가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10. 마오리 및 태평양 아일랜드 주민에 관하여, 위원회는 마오리 및 태평양 아일랜드 주민의 고용 기회를 증진하고 모든 수준의 교육체계에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를 인정하였다.

다.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 및 난관

11. 위원회는 지불 여건과 예산 제한의 균형으로 뉴질랜드 정부가 엄격한 경제적, 사회적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 결과로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집단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라. 주요 관심사항

12. 위원회는 권리법의 채택을 긍정적인 발전으로 고려하면서, 그 법안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언급이 없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권리법이 일반법의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타 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13. 위원회는 사회안정과 노동관련 체계의 최근 광범위한 개정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1991년의 고용계약법에 도입한 개정은 협약 제7조 및 제8조에 인정된 권리에 대하여 양립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14. 위원회는 정부의 적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오리와 태평양 아일랜드 주민들이 실업, 낮은 임금 수준, 불충분한 교육과 기술자격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15. 위원회는 뉴질랜드 대표단의 설명에 따라, 당사국이, 여러 복지단체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영양결핍, 기아, 무주택자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마. 제안 및 권고사항

16.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협약을 그 국가의 주요 언어로 번역하여 널리 배포하고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

17. 위원회는 뉴질랜드 정부가 마오리와 태평양 아일랜드 주민들의 평등, 특히 교육, 훈련, 고용의 분야의 평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18.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하여 실업과 사회복지의 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감시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19. 위원회는 당사국이 1991년의 고용계약법과 관련 법률이 협약 제6조, 제7조, 제8조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러한 검토 결과 규명된 상충성을 철폐하도록 권고하였다.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1948년의 결사 및 조직권리의 자유)와 제98호(1949년의 조직 및 단체교섭의 권리)의 비준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기대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14항에 언급된 통계를 수집, 공표하고 차기 정기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그 보고서에 인종별로 구분한 학교 미진학자의 비율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유보 철회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평가 : 뉴질랜드
2003년 5월 23일

E/C.12/1/Add.88.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CESC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제13차 회기 2003년 5월 5일-23일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고찰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뉴질랜드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3년 5월 12일 개최된 제11차, 제 12차 회의(E/C.12/2003/SR.11 and 12)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E/1990/6/Add.33)의 이행에 관한 뉴질랜드의 제2차 정기 보고서를 논의하고, 2003년 5월 23일 개최된 제29차 회의(E/C.12/2003/SR.29)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평가를 채택하였다.

가. 서론

2. 위원회는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당사국의 제2차 정기 보고서를 환영하였다.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와 문서 답변에 포함된 포괄적인 정보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의 주요 문서가 최근에 갱신되었음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3. 위원회는 당사국의 고위직 대표단과의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나.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5. 위원회는 인권관련사무소와 인권위원회를 통합하여 광범위한 인권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국가인권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지닌 새로운 인권위원회를 수립한 2001년의 인권개정법을 환영하였다.
6. 위원회는 당사국이 원주민 마오리 부족이 협약에 포함된 권리를 향유하도록 추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위원회는 당사국 대표단이 마오리 개발부의 고위직 인사를 포함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7. 위원회는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며, 사업장에서 괴롭힘과 차별방지 조치를 도입한 2000년의 고용관계법을 환영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조직구성과 단체교섭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98호의 비준이 임박하였다는 당사국의 의사를 환영하였다.
8. 위원회는 부모 중 한쪽에 12주의 유급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정부지원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환영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협약 제10조 2항의 유보를 철회할 의사가 있다는 선언을 강조하였다.
9. 위원회는 일반권고 제15호를 위원회가 수용하기 이전에 제출한 당사국 보고서(제417-418항)에서 물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다.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와 난관

10.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나 난관은 없음을 지적하였다.

라. 주요 관심사항

11.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필요시에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당사국 대표단의 견해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12. 위원회는 청소년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사실에 우려를 표명

하였다.

13. 위원회는 당사국이 근로 및 사회안전 권리 분야에서 다수의 국제노동기구 협약, 특히 결사의 자유와 조직 권리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사회정책에 관한 제117호, 평등한 대우에 관한 제118호를 비준하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14. 당사국이 고용 여건에 관하여 남녀간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동일한 가치의 작업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칙에 상충되는 남녀 보수간의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우려하였다.

15. 당사국이 보건 및 가족폭력사업부의 가정폭력 방지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 특히 원주민 마오리 부족에서 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16. 위원회는 당사국내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실을 우려하였다.

17. 위원회는 당사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사에 의하면 4명 중 거의 한 명이 빈곤상태이며, 빈곤 퇴치를 위한 조치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지표가 없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18. 위원회는 일부 건강지표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마오리 부족의 전반적인 보건상태는 당사국의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하여 악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마오리 부족의 평균연령이 국가 전체평균보다 매우 낮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19. 위원회는 농촌과 오지지역의 제2차 및 제3차 보건서비스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함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20. 위원회는 특히 마오리 아동과 청소년, 사회적으로 취약집단에서, 교육과 학업 중퇴자의 비율이 마오리와 비마오리 집단간에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마. 제안 및 권고사항

21. 모든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의 원칙을 확인하며,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재판 회부성에 관한 입장을 다시 고려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시에 법적, 기타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법 체계에 협약의 완전한 효력 발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국내 적용에 관한 일반 권고 제9호에 유의하도록 권고하였다.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정기 보고서에 2003년도에 인권위원회가 수립한 개방적인 실무단이 검토할 협약의 선택의정서에 관한 제안에 의견과 논평을 포함하도록 요청하였다.

23.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적인 의제로 채택하고, 이러한 권리가 국가인권실행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권고하였다.

24. 위원회는 당사국이 청소년층의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차기 정기 보고서에 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제117호 및 제118호를 비준하도록 요청하고 협약 제8조 유보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26. 위원회는 당사국이 고용분쟁의 경우에 고용관계당국이나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27. 위원회는 당사국이 동일한 가치의 작업에 대한 동일 임금의 보장을 포함하여 작업장의 남녀 불평등의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28.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개혁이 현재 진행중임을 인식하고, 위원회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 편부편모 가정, 무주택자 등을 포함하는, 불리하고 한계적인 집단에 특별히 지원을 집중하도록 권고하였고, 비용의 제한이 효과적인 사회적 보호의 수준을 낮추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29. 사회복지체계가 다양한 범위의 사로 다른 사회안전혜택, 지원 조치, 자격 여건 등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 체계에 관한 정보를 모든 국민, 특히 언어나 교육적 또는 문화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특별히 목표로 하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 체계에 관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널리 배포하도록 권고하였다.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 폭력 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차기 정기 보고서에 테리토: 뉴질랜드 가정폭력방지전략의 이행에 의하여 달성한 성과에 관한 정보, 특히 가정 폭력의 경우를 성별, 인종집단 및 연령별로 구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31.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청소년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 문제에 관하여 상호 비교 가능하고 구분된 자료에 기반하여 차기 정기 보고서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32.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불리하고 한계적인 집단, 원주민 마오리 및 태평양 아일랜드 주민 등의, 빈곤 발생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지표로 빈곤퇴치 계획을 채택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관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1년 5월 4일 채택한 빈곤퇴치 선언(E/C.12/2001/10)을 언급하였

다.

33. 위원회는 당사국이 원주민 마오리 부족의 보건 상황의 향상을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농촌과 오지 지역에서 보건서비스의 이용을 평등하게 하도록 노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에 관하여 일반 권고 제14호를 유의하도록 권고하였다. 당사국은 또한 차기 정기 보고서에 이 분야의 성과에 대하여 분류하고 상호 비교 가능한 기반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35. 위원회는 당사국이 원주민 마오리 부족이 교육을 평등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채택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정기 보고서에 마오리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불리하고 한계적인 집단의 입학율과 중도 탈락율을 분류하고 상호비교 가능한 기반에서 구분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36.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제공하고, 국가 공무원과 재판관들에게, 인권,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대하도록 권고하였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 공무원과 재판관을 포함하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 최종평가를 널리 배포하고, 차기 정기 보고서에 이행을 위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3차 정기 보고서의 작성시에 비정부기구와 기타 시민사회 단체와 협의를 계속하도록 권고하였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3차 정기 보고서를 2008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 독일
1994년 1월 5일

E/C.12/1993/17.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 CESC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고찰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독일

1. 본 위원회는 1993년 11월 30일~12월 1일에 개최된 본 위원회의 제35차, 제36차 회의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13조에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권리 이행에 대해 독일이 제출한 정기 보고서 (E/1990/7/Add.12)를 심의, 1993년 12월 8일 열린 제46차 회의(제9회 정기총회)에서 다음의 최종평가를 채택했다.

가. 서론

2.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가 1989년 현재의 상황 보고에 지나지 않았지만 상세한 내용을 담아 제출해 준 데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예정대로 제8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에는 유감을 표한다.

3. 본 위원회는 독일 대표단이 당 보고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안에 포함된 서면 질의와 대화 중 위원들이 제기한 구두 질문에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답변해 준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최근 통일 독일 이후의 상황이 교

육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관련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4.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간단히 제출한 당사국에 관한 "핵심 문서"의 일반 정보를 통해 독일정부가 기울인 노력에도 유의하고 있다.

나. 긍정적 측면

5. 본 위원회는 본 협약 제13조와 제15조에 명시된 권리 이행을 위해 독일 정부가 취한 조치를 환영한다.

6. 본 위원회는 특히 독일 거주 이주민에게 적절하게 일반 및 직업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취한 노력을 치하한다.

7. 또한 본 위원회는 외국 출신 독일인에 대해 독일 당국이 취한 정책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다. 관심사항

8. 본 위원회는 구 동독의 공직자, 특히 교사에 대한 취업 현황과 그 중 일부를 해고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독일 대표단이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해 준 점에 유의한다. 하지만 본 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권고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가 1993년 국제노동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새로운 연방주의 교사 채용시 차별에 관해 우려를 제기했음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우려사항이 비정부기구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본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취업의 기회와 여건은 본 협약과 1958년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11호-차별(고용 및 직업)에 관련된 객관적 노동 기준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정치적인 연유로 인한 고용 차별은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9. 또한 본 위원회는 독일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성취도 면에서 여전히 상존하는 남녀 차별과 교육과 직업 전 분야에서 저조한 여성 참여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라. 제안 및 권고사항

10. 본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이상적인 성 균형과 여성과 남성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 당국이 취한 적극적 조치를 환영한다.

11. 본 위원회는 또한 본 협약 제1조에서 제15조를 다루는 독일 정부의 차기 보고서에 독일 통일이 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정보와 특히 교육 문화 활동에 책정된 예산과 예산 집행에 대한 최근 통계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또한 차기 보고서에는 새로운 연방주의 문화개발 및 교육 수준과 독일의 다른 부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어떤 특별한 정책이 취해졌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언론매체를 통해 과학 및 문화 개발과 홍보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채택되었는지도 제시하기 바란다. 추가로 성인이 용이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과 독일의 문화 생활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12. 본 위원회는 독일 당국에게 구 동독 출신의 교사와 교수, 또는 기타 교육 관계자를 존중함으로써 그들이 교육 활동을 지속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별 받지 않고 문화 생활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13.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 교육은 물론 언론매체의 홍보를 통한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두 가지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기회 균등 사안을 다뤄줄 것을 촉구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 독일
1998년 4월 12일
E/C.12/1/Add.29.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 CESC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고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독일

1. 본 위원회는 1998년 11월 23일과 11월 24일 개최된 제40차 및 제42차 회의를 통해 독일 연방 공화국이 제출한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제3차 정기 보고서 (E/1994/104/Add.14) 및 질문 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검토하였으며, 1998년 12월 2일 개최된 제54차 회의에서 다음의 최종평가를 채택하였다.

가. 서론

2. 본 위원회는 협약상 권리에 관한 제3차 정기 보고서이자 1990년 10월 독일의 통합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위 보고서의 제출을 환영한다. 해당 보고서는 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

3. 본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의 발표를 담당한 고위 대표단이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 쉐슬러 슈뢰더 총리의 새 내각은 일자리 창출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이전 행정부와는 다른 의제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했다.

4. 본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가 비정부기구의 참여 없이 준비된 것에 유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기구는 본 위원회가 정부의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여를 했다.

5. 본 위원회는 다음에 대한 질문과 관련한 답변이 정확하고 상세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구 동독 지역 내 실업 문제

독일 통합이후 실직한 구 동독의 공무원 및 교수의 수

빈민 및 사회 보장 수혜자의 수

에이즈 피해자, 여성에 대한 착취와 아동 학대

연금 계획

나. 긍정적 측면

6. 본 위원회는 서두 연설에서 대표단이 보여준 긍정적 태도 및 1998년 11월 11일 캔슬러 내각이 발표한 정책 성명서를 통해 새 행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촉진할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7. 새 정책 성명서에서도 반영됐듯이 정책의 가시적인 변화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최대한 발전적으로 실현될 수 있고, 신도시에 대한 혜택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시간에 여전히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8. 본 위원회는 새로운 정책이 다음을 포함하는 것에 만족을 표한다.

일반 여성 및 청년들이 특히 신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

사업장 내 여성의 동등 기회 보장을 위한 행동 계획의 수립

성평등법의 제정

가족의 필요를 반영하는 학교 및 보육 체계 구성

민족적 기원에 바탕을 둔 차별 철폐 및 해외에서 아동 성학대 행위를 한 독일인의 기소를 위한 법령 도입

국가 보험 계획, 기업 연금 계획, 개인 연금 계획에 기반한 연금 제도의 개혁

기업의 생산 자산 및 이윤 배분에 있어 직원들의 참여

해고 방지 방안 및 질병 보상 지급 등의 재실시

9. 본 위원회는 연방의 문화 정책을 이행하고 각 지역을 통합할 책임을 진 문화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 주목한다. 장관은 교회 및 종교 단체 간의 통합이 주요 정책의 일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서로 다른 종교 단체 간 대화를 발전시키고 인종적 적대 및 외국인 혐오 주의를 감소하기 위한 것이다.

10. 본 위원회는 의회 내 독립적인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외무부 내에 '인권 부서'를 개설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주목한다.

11. 본 위원회는 선택 의정서의 조인과 관련하여 정부가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

다.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 및 문제점

12. 동독과 서독의 완벽한 통합을 이루기 위한 확고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부분적으로만 완성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협약의 완전한 이행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다.

라. 관심사항

13. 본 위원회는 국내법 체계에서 협약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협약을 적용

한 판결 사례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14. 본 위원회는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동독 지역의 실업률이 서독의 두 배인 것에 유의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특히 여성과 외국인이 높은 실업률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15. 본 위원회는 빈곤선 혹은 빈곤 최대치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정부 대표자가 빈곤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유의한다.

16. 본 위원회는 교사와 과학자, 교수 등 이전 독일 민주 공화국의 과학 기술 영역의 공무원 중 단지 12%만이 재고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실업 상태이거나 적절한 보상 및 만족할만한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 위원회는 이들 중 대다수가 직업적 혹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해고됨으로써 협약 제2조 2항에 위배됨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신도시 내 교사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가 협정의 이행 및 권고를 위한 국제노동기구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바 있으며, 독일 비정부기구들도 유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7. 본 위원회는 독일 내 망명 요청자의 지위, 특히 그들의 요청을 처리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 및 최종 결정 전까지 경제적 권리와 보건 권리가 지연되는 것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18. 본 위원회는 또한 독일 내 신티 족과 로마(집시) 유랑민들의 어려운 상황 및 주거, 교육, 고용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것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집시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보상 정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9. 본 위원회는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독일 공무원들에게 파업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협약 제8조 2항에 위배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20. 본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결혼을 위한 거래의 희생양이 되거나 성매매 및 착취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등의 폭력에 대하여 특별한 우려를 표한다.

21. 본 위원회는 아동 학대와 아동 성착취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포르노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착취로 간주되므로 이에 특별한 우려를 표한다.

23. 본 위원회는 에이즈 감염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통계,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통계 부족에 대해 특별히 우려를 표한다.

24. 본 위원회는 그 수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노숙자 및 신도시에 만연해 있는 무단거주자의 열악한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마. 제안 및 권고사항

25. 본 위원회는 협약에 명시된 권리에 대하여 입법적, 사법적 그리고(또는) 이행에 있어서 좀 더 무게를 둘 것을 정부측에 권고한다. 채널러 내각은 정책 성명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을 가능한 한 빨리 이행으로 옮길 것을 정부측에 권고한다.

26. 본 위원회는 실업 문제, 특히 신도시 지역의 실업 상황 및 빈곤층과 사회 보장 수혜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차기 보고서에 좀 더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수록할 것을 정부측에 권고한다.

27. 본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지표 및 척도의 설정 문제를 논의에 부칠 것을 정부측에 권고한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지원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 협약의 선택 의정서 조인 문제에

관하여 이를 계속 지지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한다.

28. 본 위원회는 위원회 일반 권고 4항에 따라 다양한 범주의 망명 요청자의 문제를 처리하고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입법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를 처리할 것을 정부측에 권고한다. 또한 망명 요청자의 신청 처리를 빠른 시일 안에 마치고, 협약의 정신에 부합하여 망명자의 의료, 경제, 교육적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29. 본 위원회는 청년 및 기타 취약한 집단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특히 구 동독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 수준을 높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30. 구 동독 및 서독 지역 모두에 걸쳐 연금 계획 및 사회 보장 혜택의 수혜자들 간 성별 평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31. 본 위원회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파업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정부측에 권고한다.

32. 본 위원회는 여성 매매 및 다양한 목적의 여성 착취에 반대하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채택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33. 본 위원회는 또한 해당 협약 및 국제노동기구협약에 의거하여 아동 근로를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34. 본 위원회는 나아가 아동 남용, 아동 착취 및 아동 포르노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35. 본 위원회는 인종, 출생 기원, 국적, 혹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36. 본 위원회는 국가 재건 활동의 일환으로 구 독일 민주 공화국의 공무원, 교수, 과학자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37. 본 위원회는 협약 제13조에 부응하여 대학 등록금의 인상을 억제할 것을 정부측에 권고한다.

38. 본 위원회는 구 동독 및 서독 간에 여전히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양 지역의 경계 지역 통합을 가속화 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39. 본 위원회는 정부가 본 최종평가를 모든 사회 영역에 배포하고 관련 문제의 이행을 위해 취한 노력에 대하여 위원회에 알릴 것을 권고한다. 또한 비정부기구는 본 위원회와 정부 대표단간의 논의를 더욱 풍부하고 유의미하게 만드는데 매우 큰 기여를 했으므로, 제4차 정기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있어 이들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평가 : 독일
2001년 09월 24일.
E/C.12/1/Add.68.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 CESC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제26차(특별) 회기

2001년 8월 13일 8월 31일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고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평가

독일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1년 8월 24일 개최된 제48차 및 제49차 회의(E/C.12/2001/48 and 49)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독일 정부의 제4차 정기 보고서(E/C.12/4/Add.3)를 검토했으며, 2001년 8월 31일 개최된 제58차 회의(E/C.12/2001/58)에서 다음의 최종평가를 채택했다.

가. 서론

2. 본 위원회는 정부의 제3차 정기 보고서가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제출된 것을 환영한다.

3. 본 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제출된 추가 서면 및 구두 답변의 높은 질적 수

준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협약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당국자들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과의 대화가 개방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나. 긍정적 측면

4. 본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주창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인정한다. 정부의 주도하에 2001년 3월 식량권리에 관한 협의회가 창설되고, 적절한 주거가 삶을 향유할 권리의 한 요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유엔 인권위원회에 특별 보고 명령을 설치하였으며, 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에 있어 더욱 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등 관련 사항의 긍정적 발전에 대하여 특히 환영을 표한다.

5. 본 위원회는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주의를 척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인지하며, 특히 연방 정부에 의해 극단주의와 외국인 혐오주의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관용 연맹이 설립된 것에 대해 주목한다.

6. 본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 일반 권고 사항에 부응하여 비정부기구 회담인 사회 발전을 위한 세계 회의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7. 본 위원회는 정부가 빈곤을 물리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양자 혹은 다자간 틀 내에서 국제 협력 및 발전 기금에 참가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다.

8. 본 위원회는 정부가 2000년에 인권 및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한 의회 위원회를 설립하고,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DIMR)를 설립한 것에 대하여 따뜻한 환영의 뜻을 표한다.

9. 본 위원회는 1990년의 독일 통합 이후 구 도시와 신 도시 간의 삶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에 사의

를 표한다.

10. 본 위원회는 정부가 독일 시민권의 획득에 관한 국적법 관련 법안 및 정책을 개정할 것을 환영한다.

11. 본 위원회는 특히 소수자에 대해 가해지는 상업적 성착취를 철폐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에 의해 관련 상황이 개선되었던 점을 인지하고 있다.

다. 관심사항

12. 본 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지만, 이 기관의 기능이 연구, 교육 및 정책 조언 등에 그치고,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 권한과 국가 조사 권한을 가지거나 피고용인을 위해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등 여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유의하고 있다. 이렇게 제한된 권한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가 대체로 시민 및 정치적 권리보다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유감스러운 것이다.

13. 본 위원회는 정부의 서면 답변서 및 대표단의 확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정에서 협약 및 그 조항을 참조한 해석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판사들이 적절한 인권 교육, 특히 본 협약에 보장된 권리에 대하여 교육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검사들을 비롯하여 협약의 이행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여타의 주체들에 대한 인권 관련 교육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14. 본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법령의 준비나 그 이행에 있어서 협약의 정신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체계가 부족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15. UNDP에 따르면 정부가 1998년 GNP의 0.26%를 국가발전원조에 기부하

였으나 국제연합이 제시한 0.7%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16. 본 위원회는 망명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망명 요청자 및 그 부양 가족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향유가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17. 본 위원회는 구 도시와 신 도시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에 상당한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신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며 공무원들이 적은 임금을 받는 문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18. 본 위원회는 높은 실업률,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청년 실업은 특히 신 도시에서 심각한데, 이로 인해 젊은이들이 구 도시로 이주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이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19. 국제노동기구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는 정부가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공공 영역, 특히 연방 기구 및 학교 등에서 고용의 신장,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20. 본 위원회는 흔히 '그림자 경제', 즉 가정부, 호텔 및 기내 음식 제공 산업, 농업, 청소 및 빌딩 용역업 등에 종사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혹은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1. 본 위원회는 사기업을 위한 노동에 종사하는 죄수들의 경우 자신들의 우

선적 요구를 표현할 기회 없이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22. 본 위원회는 인권위원회 및 국제노동기구 전문가 그룹의 지적처럼 판사, 소위 관리(Beamte)들, 교사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는 관리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들의 파업을 금지한 것은 노동 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협약 제8조 2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에 재차 우려를 표한다. 본 위원회는 정부가 '파업은 신의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직업적 공무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E/C.12/4/Add.3, para. 82)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협약 제8조 2항에 명시된 '국가 행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본 위원회, 국제노동기구(협약 98호), 유럽 재판소의 좁은 해석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

23. 본 위원회는 정부의 사회보장 개혁안 및 개혁 작업 중인 연금 제도가 가족, 여성, 노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연금 개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최근 연방 헌법재판소가 그 계획안이 가족에 대한 잠재적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강조한다.

24. 본 위원회는 국가 보험연합 의료지원(MDS)이 밝힌 것처럼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가정 간호 상황이 열악한 것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한다.

25. 본 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자, 특히 여성들이 조심성 없는 경찰과 판사, 검사의 태도, 적절한 보호의 부족, 본국으로 추방될 위협의 잔존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피해를 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26. 본 위원회는 아동 보육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동등 참여가 어려움을 겪고 성평등을 이루려는 정부의 노력도 난관에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27. 본 위원회는 정부가 빈곤선이나 빈곤 극대치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차 우려를 표한다. 본 위원회는 특히 및 사회적으로 주변부에 있는 편부모, 학생, 장애 연금자 자에 대해 연방 사회 보장법에 의한 원조를 통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

28. 본 위원회는 1998년 본 위원회의 최종평가에도 언급하였지만, 상황이 열악한 노숙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한다.

29. 본 위원회는 일부 지역에서 무상 고등 교육 제도를 폐지하고 수업료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우려한다. 어떤 경우에는 지급된 수업료가 대학의 지출이 아니라 지역의 행정 비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마. 제안 및 권고사항

30. 상기의 12항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제한된 기능 및 권한을 고려할 때, 본 위원회는 정부가 동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장하거나 혹은 더욱 폭 넓은 기능과 권한을 가진 또 다른 국가 인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한편 본 위원회는 국가 인권위원회가 다음에 대하여 기능과 권한을 계속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시민권, 정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동등한 주의를 기울일 것, 이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 특히 공무원, 변호사 및 판사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할 것, 인권 문제와 국제 협력간의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둘 것,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 제2부, 71항에 언급된 것처럼 포괄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할 것.

31. 본 위원회는 정부가 국제 재정 기구들, 특히 국제 통화 기금 및 세계 은행의 회원으로서 이들 기구의 정책과 결정이 협약에 대한 정부의 의무 사항, 특히 국제 원조 및 협력에 관하여 명시한 제2조 1항, 제11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32. 본 위원회는 정부의 의무 사항이 사회복지 및 원조, 주택, 의료 및 교육 등에 관한 입법 및 정책 수립의 초기 단계부터 준수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기구적 구조를 검토하고 이를 강화하도록 정부측에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나아가 환경 평가 제도에 필적하는 '인권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여 모든 입법, 행정 정책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협약의 의무 사항이 항상 고려된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

33. 본 위원회는 국가발전원조에 대한 기부 금액이 국제 연합이 제시한 바와 같이 GNP의 0.7%에 이르도록 정부가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34. 본 위원회는 망명 요청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망명 요청 처리를 신속하게 할 것을 정부측에 권고한다.

35. 본 위원회는 구 도시와 신 도시 사이의 삶의 질, 고용 및 공무원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

36. 본 위원회는 높은 실업률, 특히 구 동독 지역 내 청년 실업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정부측에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37. 본 위원회는 여성이 특히 승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기회를 보장 받는 등 노동 시장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적, 행정적 수단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시행할 것을 정부측에 권고한다.

38. 본 위원회는 고용자들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을 입법적, 행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제하여 사회 보장 및 의료 등의 최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법 근로자들의 수를 줄이도록 정부측에 권고한다.

40. 본 위원회는 협약 제8조에 의거하여 중요한 업무 담당 외의 공무원의 경

우 파업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정부측에 권고한다.

41. 본 위원회는 개정된 사회 보장 제도 및 개정 작업 중인 연금 제도가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취약한 집단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특히 본 위원회는 장기적인 보험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알려 나가도록 정부에 강하게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개정된 연금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차기 정기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정부측에 요청한다.

42. 본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가정 간호를 받는 환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긴급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43. 본 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면담하는 담당자들이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적절한 보살핌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44. 본 위원회는 특히 구 서독 지역에 아동 보육 시설을 늘릴 것을 정부측에 권고한다.

45. 본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빈곤 및 번영 1차 보고서에 사용되었던 방식 및 본 위원회의 빈곤에 관한 성명서에서도 채택되었던 국제적 빈곤 정의를 활용하여 빈곤 최대치를 설정할 것을 정부측에 고한다. 특히 본 위원회는 연방 사회 원조법에 의한 사회적 원조가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정부측에 촉구한다.

46. 본 위원회는 정부가 독일 내 노숙의 실태와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숙자들을 위해 삶의 기준점을 적절히 설정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들을 고려하도록 정부측에 권고한다.

47. 본 위원회는 고등 교육에 관한 국가 입법 체계 내에서 궁극적으로 이를 없애는 관점으로 수업료 인하를 시행할 것을 연방 정부에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교실의 규모 등 교육의 질적 수준에 관하여 상세하고 새로운 정보와 통계적 자료를 차기 정기 보고서의 수록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독일 교육 체계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 교육의 범위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차기 정기 보고서에 신도록 요구한다.

48. 본 위원회는 본 최종평가를 모든 사회 영역에 배포하고 관련 이행 노력에 대하여 차기 보고서에 실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차기 정기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 비정부 기구 및 여타 시민 단체의 참여를 계속 보장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

49.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는 본 최종평가에 포함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다음 5차 정기 보고서에 수록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 멕시코
1994년 1월 5일

E/C.12/1993/16.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 CESCR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고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멕시코

1.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항에 관한 멕시코의 제2차 정기 보고서를 1993년 11월 29일과 30일에 열린 제32차, 제33차, 제34차, 제35차 모임에서 심의하여 1993년 12월에 열린 제49차 회의(제9차 회기)에서 다음의 최종평가를 채택하였다.

가. 서론

2. 위원회는 멕시코가 위원회 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준비한 것과 위원회와 성과 있는 대화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회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한 현안 목록(E/C.12/1993/WP.16)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가 제공한 서면 정보를 환영한다. 당사국 대표단이 제공한 보충 정보 및 협약 이행시 드러난 문제와 관련하여 대표단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에 위원회와 당사국 간의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하였다.

나.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당사국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및 개혁안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멕시코 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수많은 활동을 지적한다.

4. 위원회는 멕시코 실업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진보에 특히 주목하는 1989-1944년 국가개발계획의 채택 및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생계를 이어갈 기회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대프로그램(PRONASOL)의 채택을 지적한다. 또한 위원회는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조직적으로 농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는 정부의 성명을 환영한다.

다. 협약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 및 난관

5. 위원회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상당한 규모의 외채 문제로 특징 지워지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주요 사회복지사업에 부족하게 할당된 예산의 불평등한 분배 현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 즉 특히 아동, 빈곤 수준 미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및 많은 원주민과 같이 소수 민족에 속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해외로 떠나는 수많은 멕시코 이주노동자들과 관련이 있다.

라. 주요 관심사항

6. 위원회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빈곤을 겪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는 사람들이 빈곤 수준 이상의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근 수 년 동안 최소 임금 수준에서 구매력이 쇠퇴한 점에 주목한다.

7. 위원회가 또 우려하는 사항은 수 많은 아동, 즉 유기 아동, 부랑 아동, 또는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동이 처한 상황이다. 이들은 협약에서 정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없으며, 특히 범죄 행위, 마약 중독, 성적 착취와 같은 상황에 빠지기 쉽다. 대규모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집중된, 많은 수의 아동(34%)은 초등 교육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한 상태로 학교를 중퇴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착취에 빠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8. 위원회는 경제적 위기 및 부의 불균형으로 야기된 어려운 처지로 고통 받고 있는 수 많은 원주민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원주민이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언어를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한다. 비록 정부가 25개 국어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무료로 출판 및 배포하여도, 위원회는 원주민을 위해 시행된 전반적인 정부 프로그램이 부적당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9. 또한 위원회는 멕시코의 상당 인구가 상하수와 같은 기본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부적절한 생활 및 주택 조건을 견뎌야 하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10. 위원회는 멕시코 도시 및 시골에 강제 추방이 만연한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가 특히 우려하는 점은 바로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추방 당하거나, 추방으로 위협 받고 있는 현실이다.

마. 제안 및 권고사항

11. 위원회는 최소 임금 생활자의 구매력 쇠퇴를 저지하고 사회적 약자들, 특히 아동 및 빈곤 수준 이하의 생활자에게 유리한 특정 예산 재원을 할당하는 노력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원주민의 언어, 문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보존할 수 있고, 동시에 협약에서 보장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개선하도록 재원이 사용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특히 당사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협약에 설정한 권리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12. 위원회는 향후에 멕시코 인권위원회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13. 위원회는 멕시코의 심각한 주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히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적절한 시민 복지 사업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정책 및 조치의 신속한 채택, 그리고 낮은 수입 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의 활용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

회는 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4호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멕시코가 협약 제11조의 의무사항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임대 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고 기타 관련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14.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규모 추방을 유도하는 정책 조치를 폐지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강제 추방의 사례가 언뜻 보기에 협약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예외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일반 논평 제4호를 상기시킨다.

15.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육 및 문화 영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점에서 협약 제13조에 따라 초등 교육이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도록 무료 교육 및 의무 교육이 되어야 함을 상기시킨다.

16. 위원회는 협약에서 보호를 하고 멕시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도록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적인 적응 프로그램이 구성 및 시행해야 하는 필요성에 당사국의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 멕시코
1999년 12월 8일

E/C.12/1/Add.41.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CESCR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협약 제16조 및 제17조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고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멕시코

1. 위원회는 멕시코의 제3차 정기 보고서(E/1994/104/Add.41)를 1999년 11월 25일과 26일에 열린 제44차부터 제46차 회의동안 심의하여, 1999년 12월 2일에 열린 54차 회의(제21차 회기)에서 다음의 최종평가를 채택하였다.

가. 서론

2. 위원회는 멕시코가 제출한 제3차 정기 보고서 및 위원회 현안 목록에 대한 서면 답변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파견한 대표단 및 이번 회기의 건설적인 대화에 감사를 표한다.

나.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협약 하에서 효과적인 권리 이행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요인, 즉 당사국의 향상된 거시 경제 차원의 실천, 특히 외채 감소, 물가 하락 및 수출 규모 성장에 주목한다.
4. 위원회는 국제인권협약 기구에서 채택한 권고사항을 따라 정부부처간 국가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8.9% 증가한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하여 증가한 사회복지지출 비용 및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부문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수립한, 교육, 보건, 영양에 관한 프로그램 (PROGRESA)과 같은 많은 프로그램에 주목한다.

6. 위원회는 북미자유협정(NAFTA)의 이행이 멕시코의 특정 취약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감사한다.
7. 위원회는 경제 협력 및 발전을 위한 조직 및 미주기구(OAS)의 반부패 협약에 대한 멕시코의 승인을 환영한다.
8. 위원회는 국가여성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la Mujer)이 수립된 것을 감사한다. 동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감시 및 지원하는 감시 계획을 포함한다.
9. 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특별 정부 기구 (Procuraduría Nacional de la Defensa de los Trabajadores)의 설립을 환영한다.
10. 또한 위원회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당사국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협약 비망록의 최근 최종평가를 환영한다.
11. 위원회는 협약에 대한 향후 선택의정서 채택과 관련하여 멕시코 정부가 제시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환영한다.

다. 협약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 및 난관

12. 위원회는 1995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기가 멕시코 국민, 특히 가장 취약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지적한다. 상당한 양의 공적 자금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취약한 부문은 여전히 멕시코에서 고통 받고 있다.
13. 또한 위원회는 멕시코에서 일어난 자연 재해에 주목하고 당시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이행을 보장하도록 정부에 부가된 제한을 인정한다.
14. 위원회는 협약 하에서 여성의 권리 이행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멕시코의 특정 전통, 관습 및 문화적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지적한다.

라. 주요 관심사항

15. 위원회는 이전 보고서를 검토한 후 채택한 최종평가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노력이 불충한 점에 우려를 표한다.
16. 위원회는 빈곤을 감소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토 기간

동안 진보가 매우 적게 나타난 점을 우려한다. 이는 빈민 및 극도의 빈민층의 증가로 저해된다. 위원회는 구조적인 빈곤의 원인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다양한 사회 부문간, 도시와 시골 간에 보다 평등한 부의 분배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7. 또한 위원회는 멕시코 사회에서 경시되어 온 취약한 부문에 만연해 있는 다양한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사국의 접근 방식이 조화롭지 못한 점에 우려를 표한다.

18. 위원회는 특히 치아파스 게레로, 베라크루스, 와하카 지역의 원주민이 처한 곤경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들은 특히, 보건 복지, 교육, 노동, 적절한 영양 섭취 및 주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19. 위원회는 부패의 문제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협약에서 보호하는 권리에 관하여 심각한 문제가 미치는 영향을 타파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하여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만족하지 않는다.

20. 위원회는 물가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과 같이 멕시코의 거시 경제 차원의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약 5개의 최저임금은 국내 법률(헌법 제4부 제123조)에서 반영한 바와 같이, 협약 제7조(가)-(ii)항의 위반 조항에서, 공식적으로 설정된 기본 식량 생산량(*canasta básica constitucional*)을 획득해야 한다.

21. 위원회는 마퀼라도라(*maquiladoras*)의 여성 근로자의 지위에 유감을 표한다. 이들 근로자들 중 일부는 채용시 및 작업 도중 틴틴이 임신 진단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임신할 것이 발견되면 해고를 당한다.

22. 위원회는 기초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16세이기 때문에 아동의 최소 노동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6세로 높이는 공약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3. 또한 위원회는 비록 노동 조합을 구성할 권리 및 파업할 권리가 멕시코 헌법과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당사국이 협약 제8조의 제한사항을 철회하는 계획의 부재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특히 공공 부문의 노동 조합주의가 다원적이지 않으며 노동 조합 간부가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

24. 위원회는 사회 복지 제도의 민영화를 우려한다. 이는 실업자, 불완전 취업자, 낮은 임금 근로자 및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와 같이 개인 연금을 운영할 지위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서 특정 혜택을 박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 위원회는 치아파스 및 멕시코 기타 주의 원주민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군사 및 준군사 세력의 존재를 우려한다. 특히 이러한 세력이 발전 프로그램의 감시 및 이행과 경제적 사회적 지원의 배치를 간섭한다는 내용의 시민단체에서 제공한 진술 및 해당 공동체에 상담이 부재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6. 위원회는 가정 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의 높은 비율을 경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부랑 아동의 수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27. 위원회는 현 최종평가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과 강제 추방에 관해 대표단에게 서면 및 구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재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현재까지 위원회는 해당 문제의 정도 및 강제 추방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주택 공급 부족 및 주택 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은 점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이는 전기 설비가 미비하고 적절한 하수 처리 및 배수 시설에 부족한 시골에서 두드러진다.

28. 위원회는 영양 실조 상태가 특히 시골 및 5세 이하의 유아에게 지속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영양 실조와 관련된 질병이 멕시코 사망률의 주된 요인임을 알고 이를 우려한다.

29. 또한 위원회는 멕시코 여성의 사망 요인 중 4번째가 불법적인 낙태임을 알고 이를 우려한다.

마. 제안 및 권고사항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빈곤 타파를 위한 진보의 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제4차 정기 보고서에서 멕시코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이행을 개선하려는 진보에 관하여, 참조로 확인된 기준을 활용하고 통계 자료로 보완하면서 수행한 당사국의 평가를 감사한다.

31. 위원회는 당사국이 멕시코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빈곤의 원인을 해명하고 사회적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요청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일반적으로는 시민단체, 특히 해당 프로그램의 계획, 이행 및 평가시 목표 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요청한다.
32.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문제는 부패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협약에서 보호하는 권리의 완전한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3.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역 및 관련 집단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발 재원을 할당하도록 권고한다.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하고 외채 관련 업무, 세계 자유 시장 경제로의 편입 등과 같은 현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조정 프로그램 및 거시 경제 차원의 정책을 이행하는 경우,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35. 위원회는 당사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행이 취약한 집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권고한다.
36.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기본 식량 생산량과 관련하여 멕시코 헌법 제6부 제123조에 반영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7조 (가)-(ii)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청한다.
37.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향후 근로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건강 증명서를 요구하는 관행 금지 및 건강 증명서에 준수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마킬라도라(maquiladoras)의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요청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노동기구의 1973년 최저임금협약(협약 제138호)의 기준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8조 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해당 조항 하에서 만들어진 제한사항을 철회하도록 요청한다.

40.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 폭력, 특히 가정에서의 여성폭력 및 부랑 아동에 관한 심각한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41.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회의 가장 극빈층에 해당하는 집단에 대해 적절한 가격으로 적당한 주택을 공급하는 노력을 증대하도록 요청한다. 위원회는 강제 추방의 수 및 강제 추방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추방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강제 추방에 대해 즉각적으로 구제 조치를 취하고, 이 현안에 관하여 제4차 정기보고서에서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는 기구를 설립하도록 권고한다.
42.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아동이 기본 보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특히 시골 및 원거리 지방에 사는 원주민 가정에 속한 아동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양 실조를 근절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도록 요청한다.
43.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 사망률을 면밀히 감시하고 불법 낙태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의 성 및 생식 건강에 관한 교육 캠페인을 강화하고 학교 교과과정에도 이를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44. 위원회는 치아파스주 및 멕시코의 기타 주에서 당사국이 관련 인구가 적극적인 참여하는 동시에 무장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발전 및 사회 지원 프로그램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군대 및 준군사 세력의 역할을 감시 및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4차 정기 보고서의 개별 부문에서 현 최종평가의 이행을 해명하도록 요청한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교과과정에 포함된 인권 교육을 통해 사회 모든 부분, 특히 사법 및 행정 당국을 대상으로 협약 조항이 널리 보급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47.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 최종평가의 보급을 보장하도록 요청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 스페인
1996년 5월 28일

E/C.12/1/Add.2.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 CESC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고찰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스페인

1. 본 위원회는 1996년 3월 1일-3일 개최된 제3차, 제5차, 제6차, 제7차 회의에서 본 협약 제1조에서 제15조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해 스페인이 제출한 제3차 정기 보고서(E/1994/104/Add.10)와 회기 전 실무그룹에 의해 제기된 추가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심의했으며, 1996년 5월 14일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평가를 채택했다.

가. 서론

2.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상세한 보고서와 서면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의 추가 정보, 본 위원회 회원들과 여성을 포함해 관련된 정부부처의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과의 훌륭한 대화에 만족을 표한다.

3. 하지만 본 위원회는 스페인 정부가 동 보고서에 본 협약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그 조항들에 대해 본 협약의 모든 조항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대화를 통한 구두 설명으로 관련 사항을 들을 수 있어 만족한다.

나. 긍정적 측면

4. 본 위원회는 스페인이 본 협약에 명시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증진시키기 위해 헌법이나 여하한 방법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을 치하한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업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노력, 통신 교육을 통한 방법 등 성인의 학문 연구 추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어머니와 아버지의 위상 재고,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특별한 배려 등에 만족감을 표한다.

다.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 및 난관

5. 본 위원회는 스페인이 구조적인 변화와 경제 불황으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주목한다. 지방분권과 일부 공공 서비스의 사유화, 지속적인 대규모의 실업과 예산 삭감은 전체 인구에게, 특히 취약집단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 관심사항

6. 본 위원회는 새로운 법률 조항이 발효되었지만 직장내 동등한 대우에 관한 권리와 동등한 임금 및 교육의 접근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7. 본 위원회는 경제 불황의 여파로 사회복지 부문에서 감행된 예산삭감이 사회 취약집단에 특별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회는 위원회의 일반 권고 3항에서 명시한대로, 구조조정이나 경제불황의 과정이나 기타 다른 연유로 재원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사회 취약집단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보호될 수 있고,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견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8. 본 위원회는 특히 여성과 젊은이를 포함해 스페인에서 실업률이 매우 높

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9. 본 위원회는 특히 여성이나 일부 남부 지역에서의 문맹률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10. 본 위원회는 스페인 거주 외국인, 특히 남아프리카 출신이나 망명신청자, 불법 근로자, 집시족들에 대해 차별과 인종주의 행동이 증가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1. 본 위원회는 중앙 정부가 본 협약에 적용되는 권리에 대해 산재된 국가적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본 협약을 충실하고 적절히 이행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항상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12. 본 위원회는 일반 대중들과 언론매체가 여전히 본 협약의 조항을 알지 못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스페인 당국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데 유의한다.

마. 제안 및 권고사항

13. 본 위원회는 스페인 당국에게 남성과 여성, 특히 교육과 직업, 동일한 작업에 대한 동일한 임금 등 실효적인 평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줄 것을 권고한다.

14.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 영향을 주는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효과적으로 사회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한다.

15. 본 위원회는 스페인 정부에게 현재의 실업률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지속하라고 촉구한다. 그런 점에서,

당사국은 여성과 젊은층의 취업을 최우선 정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6. 본 위원회는 스페인 당국이 특히 여성과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17. 본 위원회는 스페인 정부가 북아프리카 출신 그룹이나 망명 신청자, 불법 근로자, 집시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18.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협약으로 규정한 권리 실현을 측정하는 효율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본 협약의 조항에 관해 산재한 국가의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19. 본 위원회는 특히 언론, 대학, 관련 비정부기구를 통해 당사국의 보고서와 최종평가가 국가 내에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 아르헨티나
1994년 12월 19일

E/C.12/1994/14; E/1995/22, paras. 221-242.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 CESC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고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아르헨티나

221. 위원회는 1994년 11월 22일과 24일 이틀간의 제30차, 제31차, 제32차 회의 및 12월 8일의 제54차 회의에서 협약 제6조 내지 제12조 (E/1990/5/Add.18)에 관한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제2차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음의 최종평가를 채택하였다.

가. 서론

222. 위원회는 1993년 제2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한 데 아르헨티나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협약 제9조 내지 제12조에 관해 정부가 추가 정보를 제공한 점을 환영하였다

223. 위원회는 검토 중인 해당 보고서 및 특히 각 보고서를 검토하기 전에 보고서와 연관된 현안들과 관련하여 전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당사국의 의무를 반복하였다. 위원회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르헨티나 보고서에 담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비록 이전에 다른 교섭 단체에 제출한 정보가 위원회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도, 제17조 3항에 따라 적절한 참조를 제공하는 것이 당사국의 책임임을 강조하였다.

224. 위원회는 주요 법률 정보가 담긴 아르헨티나의 서면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거시 경제 차원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함께 구두 발표를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집단 및 개

인의 차원에서 볼 때 아르헨티나에서 존중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한 특정 정보가 결여되었음에 주목하였다.

225. 위원회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참조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아동 복지에 관한 제10조에서 제12조의 검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해당 항목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암시를 환영하고 있다.

나. 긍정적 측면

226. 위원회는 최근 아르헨티나의 경제 발전, 특히 물가상승을 저지하고 통화 안정 및 실질 경제 성장률의 영역에서 보여준 노력을 환연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경제적 발전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이행의 필연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권리 향상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였다.

227. 위원회는 가족과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정부 프로그램 및 조치에 만족의 뜻을 전하였다. 어머니와 자녀 보호 조치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문서화 되었다. "학교 매점 프로그램"은 적절한 정부 지원으로 받아 들여졌다.

228. 위원회는 차별적인 대출 금리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 토지를 소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유지를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점유자에 의해 자택 소유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계획에 주목하였다. 비록 '토지 계획'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과 가정이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았는지 확인하려면 많은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위원회는 이러한 계획 바탕에 깔린 개념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

229.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공공 복지, 특히 노동 연금의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을 증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실업자 및 불완전 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정부에 관심을 보였다.

다. 협약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 및 난관

230. 위원회는 1983년 아르헨티나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로 많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고 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한 국가 재정의 악화로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대외 채무 및 물가상승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

어 온 문제였다.

231. 보다 합리적인 경제 질서로 적응해 나가려는 노력은 아르헨티나 사회 전반, 특히 아르헨티나 노동자의 경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구조적인 적응 프로그램의 이행은 특정 사회 집단에 위해를 가하였다. 이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주택 및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는가는 불확실하다.

라. 관심사항

232. 위원회는 아르헨티나에 만연해 있는 '임시' 노동자'가 받는 처우에 관심을 모았다.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실업이 증가하는 시기에 특히 더 부적절하다고 드러났기 때문이다.

233. 위원회는 연금 프로그램에 관한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주목하였다. 자격을 갖춘 모든 기본 지불 체계는 점차적으로 연금 수령인의 부과금에 의존하는 새 자본주의 구조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저임금 노동자 및 실업자, 불완전 고용자를 포함하여 충분한 연금 자본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논쟁의 여지가 있다.

234.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을 받은 인구에 관한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효과를 평가할 수 없었다.

235. 위원회는 아르헨티나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발안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정책 또는 향후 계획된 정책이 이러한 모든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보장이 없다.

236. 위원회는 특히 임금 인상이 뚜렷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년 물가 인상률의 약 2배가 되는 12%의 집값 폭등을 용인하는 법률 조항에 관심을 모았다.

237. 위원회는 상당 수의 불법 점유 건물, 특히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추방을 명령하여 실행한 상에 관심을 보였다. 위원회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충분한 주택 점유권에 관한 일반 의견 4호(1991)의 전문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였으며 해당 일반 의견에 따라 정책, 헌법, 조치가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238. 위원회는 공공 캠페인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정부의 노력을 깨달은 반면, 해당 캠페인이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사업장에서의 위생 및 안전이 종종 규정된 기준 이하라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239. 아르헨티나의 토착민 인구가 적다는 정부 대표자가 제출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소수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마. 제안 및 권고사항

240.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및 추가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협약 제9조에서 제11조와 관련된 전체 세부사항이 들어 있는 보고서를 향후에 제출하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에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모든 후속 보고서는 1990년 개정된 위원회의 지침(E/C.12/1991/1)에 따라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새 보고서 역시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정부에 통보된 질문지에 언급된 현안을 참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41. 위원회는 사업장에서의 위생 및 안전 분야에서 정부의 발안이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산업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모든 환경 요소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정부에 요청하였다.

242. 안정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거시 경제 차원에서 민영화 및 탈중심화를 통해 얻은 위대한 성과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해당 조치가 적절히 감시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 아르헨티나
1999년 12월 8일

E/C.12/1/Add.38.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 CESCR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고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아르헨티나

1. 위원회는 1999년 11월 17일, 18일, 19일에 열린 제33차, 제34차, 제35차, 제36차 회의와 12월 1일에 열린 제52차 회의에서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제2차 정기 보고서(E/1990/6/Add.16)를 검토하여, 다음의 최종평가를 채택하였다.

가. 서문

2. 위원회는 아르헨티나가 제출한 제2차 정기 보고서 및 위원회의 현안 목록에 대한 서면 답변(E/C.12/Q/ARG/1)은 물론 당사국 대표단과 위원회 위원 사이의 건설적인 논의를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안 목록에 대한 서면 답변 제출을 지연한 것과 적시에 번역하지 못하여 위원회 모든 위원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 위원회는 아르헨티나 서면 보고서에 중요한 법률 정보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이행되는지 평가하는데 필요한 특정 정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전통적인 토지 일부를 토착민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1994년 헌법의 제75조에 만족한다. 더 나아가 전통적인 토지의 상당한 넓이가 반환된 점을 환영한다.

5. 또한 빈곤 지수 이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비상계획 채택에 만족한다.
6.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볼리비아 및 페루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합법화 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의 이민 협약에 서명했다는 정보를 환영한다.
7. 위원회는 정부 소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 금리로 이들이 점유한 토지를 구매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 소유권을 촉진하는 정부 계획의 이행에 주목한다.
8. 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지한 샤가스병에 대한 치료법을 찾는 데 정부 보건 프로그램의 성공에 만족한다.
9. 위원회는 인권 교육이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정보를 환영한다.

다.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 및 난관

10. 위원회는 지난 4년간 아르헨티나 경제가 겪은 재정적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통화 가치 안정에 성공한 반면, 구조적인 조정 프로그램의 시행은 특히 사회의 취약집단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방해한다.

라. 관심사항

11. 위원회는 6개의 마푸체(Mapuche) 토착 공동체가 풀마리(Pulmari) 지역의 자신들의 전통적인 토지 일부에 대한 권리의 법적 인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이 토지에 대한 토지 문서를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1989년 국민 회의에서 권한을 인정한 국제노동기구 원주민 협약(1989년, 협약 제169호)을 비준하였는데, 이 협약의 현 지위에 대해 주목한다.
12. 위원회는 아르헨티나의 높은 실업률(약 15%), 특히 전통적으로 중간 계층에 속한 새 빈민층(nuevos pobres)의 상당 수에 관심을 둔다.
13. 특히 비공식적인 경제 부문 안에서 부상당한 상당 수 근로자에게 관심을 모았다. 아르헨티나 도시 근로자 중 대략 37%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실은 정부 자체 평가에 따라 일부 3백만 근로자들이 사회적 보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축한다.

14. 또한 위원회는 실업 급여가 오직 실업자의 6%만 지원되고 지방 근로자, 건설 현장의 근로자 및 공무원과 같은 일부 범주의 근로자를 제외하는 점에 주목한다.
15. 위원회는 노동 창출을 촉진하려고 채택한 조치가 특히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임시" 근로자가 대우를 받는 방식에 주목한다.
16. 위원회는 노동 관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는 입법부 개혁안의 당사국 채택에 관심을 보였다. 이는 법적 근로기준을 축소하고(24.467 법률 III장) 공동 협약의 채택을 허용하여 입증되었으며 이를 통해 근로 계약에서 규정된 재판 기한을 늘어나고, 제한된 기간의 계약이 일반화되었다
17. 위원회는 특히 고용 및 동등한 임금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별 행위가 현존함에 주목한다.
18. 또한 위원회는 정부 연금 프로그램의 민영화 범위, 특히 정부가 줄여야 한다고 허용한 24,463 법률의 제16조에 관심을 둔다. 하지만 실제로 경제적 제약을 불러 일으켜 연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19. 위원회는 포괄적인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 및 정부의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20. 위원회는 아르헨티나의 주택 문제 및 정부가 취한 발안이 이러한 점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에 주목한다. 또한 위원회는 주택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에 통계 자료가 부족한 사실을 지적한다.
21. 위원회는 특히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의 불법 점유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강제 추방이 수행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반복하여 드러내었다.
22. 위원회는 근로 감시 및 규제 기구의 민영화에 주목하고 공공 캠페인이 공공 기관에서 수행하는 효과적인 감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아님을 지적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업장의 환경이 특히 건축 분야의 경우 종종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23. 위원회는 보건에 관한 권리가 당사국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점에 주목한다. 특히 위원회는 일반 차원에서는 공공 종합 병원, 특별한 차원에서는

정신병원의 환경에 주목한다.

24. 위원회는 특히 상대적으로 기혼 여성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보건과 높은 청소년 임신 수치에 주목한다.

25. 위원회는 특히 가정 폭력에서 여성폭력사건이 증가하는데 주목한다.

26. 위원회는 당사국이 10년 동안 부랑 아동들, 특히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의 아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주목한다. 그러나 부랑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여전히 주목한다.

마. 제안 및 권고사항

27. 위원회는 당사국이 행정부 관할 안에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협약에 규정된 해당 의무사항을 주택, 보건 및 교육과 같은 현안에 관한 국가적 정책 마련의 초반에 고려할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8.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하여 협약에서 제공된 모든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 의무사항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이 1989년 국민회의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69호를 비준하고 풀마리 지역의 마푸체 공동체 권리를 보장할 해결 방안을 찾도록 권고한다.

30. 또한 정부는 실업을 줄이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청 받았다. 더 나아가 임시직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1. 위원회는 당사국이 근로 계약에서 정한 재판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 기간을 제한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단체교섭 조항에 관하여 해당 법률을 검토하고 협약 제6조 및 제7조의 이행을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32. 위원회는 아르헨티나 정부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법률 및 관습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33.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회보장제도에서 일방적으로 줄어 들거나 연기되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적절한 연금을 특히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근로

자에게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결과적으로 당사국은 모든 연금을 완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1995년 3월 31일 24,463 법률의 제16조에 호소하도록 권고한다.

34. 위원회는 본 사안에 관하여 정부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통계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35.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르헨티나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는 발안을 지속적으로 진행 및 강화하고, 차기 정기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의 주택 상황에 관한 상세한 통계 자료를 첨부하도록 권고한다.

36. 위원회는 당사국이 주택을 소유한 자들에 대한 증서를 적법화하는 정책을 지속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우선해야 하는 문제로서 불법 점유의 추방에 해당 기존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위원회는 다시 한번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를 적고 있는 일반 논평 제4호(1991) 및 제7호(1997)의 전문을 정부가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 헌법, 조치를 두 일반 논평을 고려하면서 시행하도록 보장하도록 요청한다.

37. 위원회는 정부가 사업장, 특히 건축 부문의 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환경 위생 및 안전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증대하고 산업 위생 및 안전의 관리 및 감시가 공공 기관에 의해 수행됨을 보장하도록 요청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건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고, 특히 정신 건강, 기혼 여성 사망률, 청소년 임신 및 HIV/AIDS와 같은 현안에 관심을 모으고, 차기 정기 보고서에 포괄적인 통계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39.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가정 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한다.

40.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랑 아동 문제를 근절하는 조치 및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41. 위원회는 현 최종평가에 제시된 관심 주제 및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제2차 정기 보고서를 논의하는 동안 제기된 현안 중, 특히 연금 및 사회적 보안 보장과 관련된 사안이 당사국의 제3차 정기 보고서에서 해명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42.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수준의 사회 계층에 현 최종평가를 보급하고 2001년 6월 30일일에 제출할 제3차 정기 보고서에서 해당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평가 : 영국
2002년 5월 6일.
E/C.12/1/Add.79.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 CESC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제28차 회기

2002년 4월 29일-5월 17일

협약 제 16조 및 제 17조에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고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영국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2년 5월 6일과 7일에 개최된 제11차, 제12차, 제13차 회의(E/C.12/2002/SR.11-13)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실행과 관련하여 영국이 제출한 제4차 정기 보고서(E/C.12/4/Add.5, 7 and 8)를 검토하였으며, 2002년 5월 16일 개최된 제25차 회의에서 다음의 최종평가를 채택하였다.

가. 서론

2. 본 위원회는 정부의 제4차 정기 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보고서 지침에 따라 제출된 것을 환영한다.

3. 본 위원회는 정부의 포괄적인 서면 답변 및 일부 왕국령 식민지와 부속

영토(건지 섬, 저지 섬, 맨 섬, 브리티시 버진 제도, 케이먼 제도, 버뮤다 및 몽세라)의 대표단의 참석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본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과 관련한 전문가가 포함된 정부 당국자들로 구성된 중앙 정부 대표단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위원들의 일부 질문에 대하여 대표단이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

나. 긍정적 측면

4. 본 위원회는 인권법(1998)의 제정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5. 본 위원회는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북아일랜드법(1998)의 제정을 높이 평가한다.
6. 본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이후 고용 창출을 위한 뉴딜 정책의 도입, 최소 임금 기준의 제시 (1999), 노숙자 및 퇴학 비율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 등 정부가 수행한 여러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7. 본 위원회는 중앙 정부가 의료기준법(2000)을 제정하여 잉글랜드 지역에 국가 의료기준위원회를 설립하고 웨일즈 지역에 의료기준 감시관의 설치, 국가 의료 기준을 반영한 독립 의료 기관의 최소 기준 제정 등을 시행한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
8. 본 위원회는 교도소 내 인원 규정을 새로 도입하여 수감률이 50% 까지 줄어들고, 다양한 교육적 활동이 가능해진 것을 환영한다.
9. 또한 본 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국제 인권 조항에 대한 유보 조치의 재검토 작업을 통해 법령에 의하여 무용지물을 만들었던 이들 유보 조치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대표단의 설명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

다.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

10. 본 위원회는 정부에 제출된 정보에 의해서는 영국 내에서 협약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특정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부속 영토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방해하는 요소로 제한된 인구와 자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라. 관심사항

11. 본 위원회는 중앙 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 법률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상의 권리가 여전히 국내 법령에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본 위원회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협약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나 표제 정도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역시 우려를 표한다 (1997년에 제시된 본 위원회의 최종평가 10항 참조 (E/C.12/1/Add.19)).

12. 본 위원회는 정부가 1993년 제정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 71항에 권고된 국가인권실행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럴 의사가 없다는 대표단의 의견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지을 수 없다.

13. 본 위원회는 정부가 학생, 판사 및 검사, 정부 당국자 및 공무원 등을 비롯, 협약의 실행 관련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들에 대해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14. 본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몇몇 취약집단, 특히 소수 민족과 장애인들에 대하여 취업과 주택,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사실상 지속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본 위원회는 정부가 협약 제2조 2항 및 제3조에 부합하여 차별로부터의 보호 및 평등 보장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채택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15. 본 위원회는 국가 최저 임금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제시되지 않아 협약 제7조 (가)항 (2)호 및 제11조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최저 임금 보호 정책이 18세 이하 근로자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한다. 본 위원회는 18세에서 22세 사이의 근로자에게는 더 적은 임금이 적용되는 등, 최저 임금 정책이 나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16. 본 위원회는 파업의 권리가 국내법 내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협약 제8조에 위배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본 위원회의 1997년 최종평가 11항 참조).

17. 본 위원회는 국내 폭력 사태가 최근 몇 년간 증가해 온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8. 본 위원회는 북아일랜드 등 영토의 특정 지역, 혹은 소수 민족, 장애인, 노인들의 거주 지역 등 몇몇 특정 구역에서 빈곤률이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것에 대하여 재차 우려를 표한다. 빈곤 타파와 사회적 축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설명에 의하면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특정 사회 집단 내에서 아동 빈곤의 비율이 특히 높은 것에 유의하고 있다.

19. 본 위원회는 소수 민족 등 특정 사회 집단 내에서 노숙자의 비율이 높은 것에 우려를 표한다. 다수의 노숙자들이 알코올 중독자이며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더욱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 본 위원회는 열악한 주거 상황과 '연료의 빈곤'이 여전히 많은 가족과 개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유의한다.

21. 본 위원회는 카리브 해 연안 일부 지역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높은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특히 터크스 및 케이코스 군도, 세인트 빈센트와 그레나다 지역의 높은 에이즈 감염률, 이민 근로자 및 에이즈로 인한 고아들을 위한 약품이 부족한 실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2. 본 위원회는 협약 제13조 2항 (다)호에 의거한 수업료 및 장학금 제도의 도입으로 기득권이 없는 소수자 학생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을 우려한다.

23. 본 위원회는 1997년 최종 평가 8항에서도 언급했던 북아일랜드의 교육 체계에 대해 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이 종교에 따라 분리되어 실시되는 상황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한다.

마. 제안 및 권고사항

24. 인권의 독립성과 개별성의 원칙을 긍정하고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본 위원회는 이전 권고 사항(1997년의 최종평가 21항 참조)을 다시 강조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국내법에 구체화시킬 것을 정부측에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국제법이 국내법에 구체화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일원론이든 이원론이든), 국제 협약에 비준한 이후 해당 정부는 해당 협약에 부합하여 그것이 국내 법령에서 완벽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본 위원회는 협약의 국내적 적용을 명시한 위원회 일반 권고사항 제9호를 정부측에 강조한다.

25. 나아가 본 위원회는 이전 권고 사항(1997년 최종평가 33항 참조)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행정 기관으로서 그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빈곤 구제, 사회 복지, 주택, 의료 및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하여 법률 및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협약상의 의무 조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

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의 일반 권고 사항이 수많은 다년간 국가들의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제시된 것임을 밝히며, 본 위원회는 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일반 권고 사항 및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6. 본 위원회는 중앙 정부가 국제 재정 기구, 특히 국제 통화 기금 및 세계 은행의 회원으로서, 이들 기구의 정책과 결정이 협약에 의거한 국가의 의무 사항, 특히 국제적 원조와 협력 문제를 다룬 협정 제2조 1항, 제11조 2항, 제15조 4항 및 제23조의 의무 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한다.

27. 본 위원회는 정부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1993년의 비엔나 선언 및 실행계획의 71항에 의거하여 국가인권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8. 본 위원회는 잉글랜드,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정부측에 강하게 권고한다.

29. 본 위원회는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북아일랜드 내 모든 권리 범안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 방안을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30. 본 위원회는 학생, 판사, 검사, 정부 당국자, 공무원을 비롯, 협약의 실행 책임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적합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에 대한 인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31. 본 위원회는 특히 소수 민족과 장애인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 특히 고용과 주거, 교육 상의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협약 제2조 2항 및 제3조에 부합하여 정부가 영국 법 체계 내에서 평등 및 비차별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32. 본 위원회는 2001년 더반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의 선언 및 실행계획에 따라 정부가 취한 조치와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차기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할 것을 요청한다.

33. 본 위원회는 적절한 삶의 수준을 반영하여 최저 임금을 책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최저 임금 보호 정책을 18세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도 확대할 것을 권고하며, 18세에서 22세의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차별 없이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34. 본 위원회는 파업의 권리가 보장되며 파업으로 인하여 고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구체화 하도록 명시한 선행 권고 사항(1997년 본 위원회의 최종평가 23항 참조)을 재언급한다.

35. 본 위원회는 정부가 가정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특히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 및 그 결과와 효과에 대한 정보를 차기 보고서에 게재할 것을 요청한다.

36. 국제 인권법의 기초가 되었던 인간의 존엄성 원칙 및 협약의 제10조 1항, 제10조 3항의 정신에 입각하여 본 위원회는 가정 내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아동 권리에 관한 본 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1995년 본 위원회의 최종평가 31항 참조 (CRC/C/15/Add.34)).

37. 본 위원회는 소외 계층 및 취약 집단의 요구와 북아일랜드 등의 특수 지역에 유의하며 빈곤 및 사회적 배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빈곤 철폐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정부는 빈곤에 관한 본 위원회의 성명 및 본 협약의 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을 촉구한다 (E/C.12/2001/10).

38. 본 위원회는 소수 민족 등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 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을 정부측에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나아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한다.

39. 본 위원회는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사는 가정 및 개인, 연료 부족을 겪는 주민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시행하도록 정부측에 권고한다.

40. 에이즈 문제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부속 영토의 모든 국민들이 치료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1. 본 위원회는 수업료와 장학금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채택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이는 교육의 권리에 관한 본 위원회의 일반 평가 13호의 14항, 20항, 45항에 부합하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사회 경제적 하위 계층에 대해 수업료 및 등록금 제도가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다음 보고서에서 상세히 기술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한다.

42. 본 위원회는 북아일랜드의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통합 학교를 추가로 설립할 것을 권고한 1997년의 최종 평가 29항의 권고 사항을 재언급한다.

43. 본 위원회는 협약에 대한 추가 유보 조치의 철회를 정부측에 권장한다.

44. 본 위원회는 본 최종평가를 다양한 사회 집단, 특히 행정 및 사법부에 배포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제5차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 비정부 기구 및 기타 시민 사회 단체 관련자가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45.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는 본 최종평가에 포함된 권고사항의 실행을 위한 조치들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제5차 보고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 이탈리아
2000년 5월 23일

E/C.12/1/Add.2.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CESC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고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이탈리아

1. 본 위원회는 2000년 4월 27일~28일에 개최된 본 위원회의 제6차, 제7차, 제8차 회의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이행에 대해 이탈리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검토, 2000년 5월 11일 열린 제23차 회의에서 다음의 최종평가를 채택했다.

가. 서론

2.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제3차 정기 보고서와 정부 각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제시한 주요 쟁점에 대해 서면 답변을 환영한다. 하지만 보고서와 서면 답변이 늦어진 데에는 유감을 표하며, 반면 대표단과의 건설적인 대화는 환영하는 바이다.

나. 긍정적 측면

3. 본 위원회는 조직적인 범죄 소탕을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감사를 표

하며, 또한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비난하는 여성들에게 1년간 주거 및 노동 권한을 부여한 1998년 이민법을 채택했다는 점과 국내 형법에 따라 이민자 거래를 범죄로 규정했다는 점을 환영한다.

4. 본 위원회는 또한 외국인에게 이탈리아 국민과 동일하게 주택 및 공공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토 내 정기 거주할 수 있는 평등한 권한을 부여한 Testo Unico 286/98를 승인했다는 점과, 외국인이 자신들의 최초의 집을 건설, 취득, 임대할 경우 유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는 혜택에 감사를 표한다.

5. 본 위원회는 어머니는 물론이고 아버지가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2003년 3월 8일 법률 제53호의 승인을 환영하는 바이다.

6.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에 관해 본 위원회는 성폭력을 징역형에 해당되는 "개인에 대한 범죄"로 규정한 1996년 법률 제66호의 승인을 환영한다.

다.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 및 난관

7. 본 위원회는 발칸 반도에서의 비극적 상황과 타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으로 이탈리아에 이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유의한다.

라. 주요 관심사항

8. 본 위원회는 쟁점에 대한 일부 서면 답변이 불충분하고 대화를 통해 제기된 구두 진술도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한다.

9. 본 위원회는 쟁점에 대한 서면 답변에 제시되어 있고, 본 위원회와의 대

화 기간 동안 대표단이 확인한대로 법원 판결에 협약이 뚜렷이 인용되지 않는다는 당사국의 진술에 우려를 표한다.

10. 본 위원회는 매우 많은 로마인들이 이탈리아 주요 도시 외곽에 설치된 기본적인 위생 시설조차 부족한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전반적으로 로마인들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노동분야에서 직장을 찾거나 찾으려 할 때, 그리고 주택 제공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 캠프 생활은 로마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대부분의 그 곳 아동은 어린 동생을 돌보거나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길거리로 구걸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11. 본 위원회는 보건과 직장 안전과 건강에 관한 근로 감찰단의 활동이 지방 보건 단위로 옮겨가는 현상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의 '제 협약과 권고의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가 제기한 우려사항에 당사국이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본 위원회는 이런 변화가 협력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우려한다. 또한 당사국 대표단이 본 사안에 답변을 하지 않을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12. 본 위원회는 사업장에서의 높은 사고 발생률에 불안감을 느끼며, 특히 항구 등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에 관한 법률 규정과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의 우려에 당사국이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13. 본 위원회는 특히 이전의 이탈리아 보고서에 대한 본 위원회의 최종평가에서 이탈리아 제2차 보고서(E/1993/22, para. 188)에 당 협약 제9조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 역시 사회안보 제도에 관한 당사국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4. 본 위원회는 여성 폭력 철폐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치하하지만 정부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아직 포괄적이고 공조적이며, 합의된 전략

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15. 또한 조직 범죄 소탕을 위해 당사국이 실시한 많은 조치를 치하하는 반면 이탈리아에서 자행되는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소수인종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 포르노 산업의 심각성에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16. 본 위원회는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 사이에 아직도 심한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는 여성과 청소년, 아동, 취약집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17. 본 위원회는 이탈리아에서 망명신청자는 위급 상황에서만 정부 보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애석해 하며, 이런 정책은 본 협약의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18. 교육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중등 교육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아울러 기능적 문맹 현상에 우려를 표한다. 본 위원회는 대화를 하는 도중 본 사안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제공되지 않아 아쉬움을 표한다.

19. 본 위원회는 사립 학교에 일부 공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국이 시행하고 있는 학교교육 개혁프로그램에서 논란이 되는 제안에 관해 우려를 표한다.

마. 제안 및 권고사항

20. 본 위원회는 이탈리아 정부가 특히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 은행 등 국제 단체의 회원국으로서 이들 단체의 정책과 결정이 본 협약의 의무사항, 특히 국제 원조와 협력에 관해 본 협약 제2조 1항에 제시한 책임을 준수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21.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본 협약의 조항과 본 위원회가 채택한 일반 논평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판사들을 위한 설명회를 시행하기를 권고한다.

22.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1961년 무국적자 감소를 위한 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23. 본 위원회는 특히 캠프를 저가의 주택으로 교체해 주는 등 로마인 환경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라고 권고하며 다음의 방법을 제안한다. 로마 이민자 지위의 합법화, 부모를 위한 취업 및 교육 프로그램 신설, 취약 아동이 있는 로마인 가정 지원, 특히 취업과 주택 부문에서 차별방지 법률의 강화와 시행.

24.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근로 감찰의 대상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현상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가 제시한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차기 보고서에서 근로 감찰 체제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25.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다. 특히 본 위원회는 항구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고, 1979년 국제노동기구 직업 안전과 건강에 관한 협약(제152호)을 비준하라고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에게 1993년 주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협약(제174호)과 1994년 임시직 근로에 관한 협약(제175호)을 비준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26.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예정대로 1983년 직업재활과 (장애인) 취업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라고 권고하며, 차기 보고서에서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노동부에 의해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27.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여성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 전력을 개발 하라고 권고한다. 그 전략에는 자료 수집, 관련 법률 제정, 경찰과 법무부에 대한 교육과 감시, 구타당하는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설립, 대중 의식 고양 운동 전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범죄 조직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과 아동의 인신 매매, 소수인종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 포르노 산업 등을 척결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공조적이며 합의된 국가적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29. 본 위원회는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에서 보여지는 경제, 사회적 불균형이 여성과 청소년, 아동, 취약집단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권고한다.

30.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이어가는, 대부분 여성들로 이루어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노력하기를 권고한다.

31. 본 위원회는 당사국의 차기 보고서에서 사설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의 의료비용 문제와 이것이 취약집단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를 다루어 줄 것을 제안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최근 완성된 고령자와 기타 취약집단만을 위한 '국가보건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32.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망명 신청자가 차별받지 않고 정부 보조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를 촉구한다.

33.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학교 중퇴 및 청년 실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국가적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를 권고한다.

34. 본 위원회는 이탈리아 기능 문맹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

35. 사설 학교의 공적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는 그런 자금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연유로든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당사국에게 상기시킨다.

36.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번 최종평가를 널리 유포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차기 보고서를 통해 이번 최종평가의 이행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측에 제공하라고 제안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평가: 일본. 2001년9월24일.

E/C.12/1/Add. 67.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CESC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제26차 회기 2001년 8월 13일-31일

협약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검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평가
일본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1년 8월 21일에 개최한 제42차, 제43차 회의(E/C.12/2001/SR.42 및 43)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일본의 제2차 정기보고서(E/1990/6/Add.21)를 검토하였으며, 2001년 8월 30일에 개최한 제56차 회의(E/C.12/2001/SR.56)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평가를 채택하였다.

가. 서론

2.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당사국의 제2차 정기 보고서를 환영한다. 위원회는 협약에 관련된 사항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과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토의와 위원회가 제기한 사항에 관한 답변의사를 환영한다.

나.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당사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진국의 하나(유엔개발계획 인간발달지수 순위에서는 9위)라는 사실과 대다수의 국민이 높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4.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적개발지원(ODA)에 국가총생산의 0.27%를 할

당하고, 그 중 40%는 협약에 포함된 권리와 관련된 분야에 할당하며, 절대액 수에서 세계 제1위의 기여국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5. 위원회는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포럼에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에 당사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6. 위원회는 당사국이 동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작성에 국내의 비정부기구를 참여시킨 점을 높이 평가한다.

7. 위원회는 당사국이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2000년에는 남녀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언급하였다.

8. 위원회는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당사국의 최근 조치를 환영하며, 여기에는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 처벌 및 아동보호법(1999), 스토킹행위방지 및 피해자지원법(2000), 아동학대금지법(2000), 배우자폭력금지 및 피해자보호법(2001) 등이 있다. 또한 위원회는 법적 소송기간 중의 아동학대와 성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2001)을 환영하고, 아동의 상업적 성적착취금지 실행계획의 수립(2001)을 환영한다.

9. 위원회는 당사국이 1995년 한신-아와지 지진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위하여 임시적, 영구적인 거주시설을 신속히 설립하기 위하여 국가, 지역, 지방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한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

다. 주요 관심사항

10. 위원회는 비록 헌법에 다수의 관련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만, 당사국이 국내법에 협약의 효력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협약 규정이 법률 과정과 정책 제정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법률이나 행정 제안, 또는 의회 토의에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법원의 결정이 일반적으로 협약의 규정을 언급하지 않으며, 이는 규정이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사실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이 그러한 입장을 인정하여 협약에 의한 의무조항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11.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미 언급된 조항에 포함된 권리의 실현을 이미 상당히 달성하였다고 주장하며 협약의 제7조 d항, 제8조 2항, 제13조 2-b항과 c항의 유보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특히 우려하며, 그 반면에 위원회가 입수한 정보는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이 아직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12.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원칙을 점진적인 실현의 대상이며 "합리적인" 또는 "합리적으로 정당화가 가능한" 예외로 들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13. 위원회는 일본 사회에서 소수집단, 특히 빈민집단과 오키나와 주민, 원주민 아이누족, 한국계 후손들이 고용, 거주, 교육분야에서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14. 위원회는 또한 사생아, 특히 그들의 상속권과 국적 권리의 박탈 등 지속적인 법적,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우려한다.
15. 위원회는, 일본 사회의 정치적 대표 기구와 공공서비스와 행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전문직 및 의사결정 지위에 여성에 대한 널리 확산된 차별과 남녀간의 실질적인 불평등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16. 위원회는 2001년에 채택된 가정법률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 성 희롱, 아동의 성 착취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17. 위원회는 또한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작업에 대한 남녀간의 임금에서 실질적인 불평등, 특히 전문 직위로의 승진 기회가 적거나 거의 없는 주로 사무직에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에서 이 관례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불평등은 당국이 취하고 있는 남녀평등고용기회법의 1997년 개정안과 같은 법적, 행정적, 기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18.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노동기구의 일부 중요한 협약, 즉 1975년도의 강제노동철폐협약(제105호), 1958년도의 차별(고용 및 직업)협약(제111호), 1989년도의 원주민 및 부족민협약(제169호) 등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19.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을 허용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보였다.

20. 위원회는 45세부터 근로자가 적절한 보상이 없이 임금이 삭감되거나 심지어는 해고되는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보였다.
21. 위원회는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와 공무원의 파업, 심지어는 교사 등 정부 서비스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파업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는 인력위원회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제8조 2항(당사국이 보류하고 있음)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제87호)을 위반하는 것이다.
22. 위원회는 보고 받은 핵발전소의 사고와 그러한 시설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이며 또한 핵 사고의 방지와 처리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준비가 부족함을 우려하였다.
23. 위원회는 또한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연금체계를 최근에 변경한 후의 결과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만약 은퇴 연령과 공공연금 혜택을 받게 되는 연령이 일치하지 않으면 65세 이전에 은퇴해야 하는 사람은 수입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24. 위원회는 최소 연금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남녀간의 임금차이에 의한 연금의 실질적인 성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25. 위원회는 법과 관행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근로와 사회안전 권리에서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6. 위원회는 주로 개인기금에 의하여 조성된 아시아여성기금이 "종군위안부"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관련 여성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27. 위원회는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에 효고현이 계획하고 실행한 대규모 재정착 사업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적절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노령층의 독신자들이 현재 거의 개인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가족을 잃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정신적인 치료는 거의 없거나 전무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60세 이상으로 재정착한 다수의 지진 피해자는 지역사회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건센터나 파견 간호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28. 위원회는 지진으로 피해를 받은 한신-아와지 지역의 빈민층은 건물 재건축을 위한 재원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부

는 주택을 새로 신축할 여력이 없이 기존의 주택 용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매각하여야만 한다.

29. 위원회는 일본 전국에 있어서, 특히 오사카/카마가사키 지역의 무주택자의 숫자가 많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무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부재에 우려를 표하였다.

30. 또한 위원회는 강제 철거, 특히 임시 주거에서 무주택자를 퇴거시키고 우토로 지역에서 장기간 주택을 점유하였던 사람들의 철거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위원회는 특히 법원이 조건부처분과정의 법원명령에 따라 시행유보도 없이, 어떤 설명도 주지 않고 조건부 퇴거명령을 발행하여, 어떠한 항소권도 무효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조건부 퇴거명령을 영구적인 명령으로 변경시켜 일반논의사항 제4호, 제7호에서 위원회가 수립한 지침을 위반하는 약식과정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31. 위원회는 모든 교육 수준에서 학교 결석이나 병환, 또는 학생의 자살을 초래하는 과도하게 경쟁적이고 스트레스가 심한 특성을 우려하였다.

32. 위원회는 소수민족의 아동은 자신들의 언어로 교육을 받고 공립학교에서 자신들의 문화에 관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에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인 학교와 같은 소수민족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하여도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지 못하며,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대학입학시험을 위한 자격도 부여하지 못하는 사실에 관심을 보였다.

라. 제안 및 권고사항

33.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에 의한 법적 의무조항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협약의 규정을 최소한의 주요 의무조항에 관한 일반논의사항 제13호, 제14호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일반 논의사항에 요약한 바에 따라 실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석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당사국은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인권영향평가"와 기타 조치를 도입하여 협약의 규정을 법적, 행정적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 고려하도록 요청하였다.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7조 d항, 제8조 2항, 제13조 2-b항과 c항에 대한 유보의 철회를 고려하도록 촉구하였다.

35.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협약에 대한 지식과 인식, 그리고 적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권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36. 당사국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취한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비엔나선언과 실행계획 제2부 71항에 따라 종합적인 국가실행계획을 개방적이고 협의과정을 통하여 채택하도록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3차 정기보고서에 국가실행계획의 사본을 첨부하고, 그 계획이 어떻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요청하였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개도국에 대한 국제지원 제공 노력을 확대하고, 유엔이 정한 국가총생산의 0.7%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재정기구,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회원으로서 이러한 기구의 정책과 결정이 협약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조항, 특히 국제적 지원과 협력에 관한 협약 제2조 1항, 제11조, 제15조, 제22조 및 제23조에 포함된 의무조항 등 당사국의 의무조항과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요청하였다.

38.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수립을 제안하겠다는 당사국의 의사표명을 환영하고 당사국이 그 수립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되 1991년의 파리 원칙과 위원회의 일반논의사항 제10호를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2조 2항에 명시된 차별금지원칙이 절대적인 원칙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차별 이외의 예외조항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률을 강화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40. 당사국이 현재 우토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관하여 협의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빈민집단, 오키나와 주민, 아이누 원주민을 포함하는 일본 사회내 모든 소수민족에 대하여 취업, 거주, 교육분야에서 합법적이며 실질적인 유형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41.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대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생아" 개념을 법과 관행에서 제거하고, 사생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즉시 취하고, 또한 피해자의 협약상의 권리(제2조 2항, 제10조)를 회복시키도록 요청하였다.

42. 위원회는 당사국이 남녀간의 평등을 더욱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고용, 근로조건, 임금, 대표기구와 공공서비스 그리고 행정부의 고위직 분야에서, 기존 법률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적절한 남녀평등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도록 촉구하였다.

43.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 성 희롱, 아동의 성적 착취 사례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내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러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효과적인 제재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44. 위원회는 당사국이 남녀평등고용법과 같은 기존 법률, 국제노동기구가 언급한 고용관리 관련 지침 등 관련 행정 및 기타 프로그램과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적절하고 새로운 조치를 채택하여, 동일한 가치의 작업에 대한 임금에 관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05호, 제111호, 제169호의 비준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고하였다.

47. 위원회는 당사국이 4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이전의 임금수준과 직업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48. 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에 부응하여 당사국이 공무원과 공공분야 근로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였다.

49. 위원회는 핵발전시설의 안전관련 문제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였고, 또한 당사국이 핵 사고의 방지 또는 조기대응에 관한 계획의 준비를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50. 위원회는 공공연금의 수령 연령이 점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65세 이전 퇴직자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51.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연금체계에 최소연금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연금체계에 지속되는 실질적인 남녀불평등을 가능한 최대 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52.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률상의 차별규정을 철폐하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비율을 준수하도록 추진활동을 계속하고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너무 늦기 전에 종군위안부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안과 조치에 관하여 종군위안부를 대표하는 기구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이 효고현의,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대하도록 요청하였다.

55.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1조의 의무조항에 따라, 빈민 지진 피해자들이 주택 융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소유 재산을 매각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파괴된 주택 재건을 위하여 공공주택기금이나 은행에 대한 재정의무를 충족시키도록 빈민 지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를 요청하였다.

56. 위원회는 당사국이 일본의 무주택자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나 현 정부와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였다. 당사국은 또한 무주택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생활보호법 등 기존 법률의 완전한 시행을 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7.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철거명령, 특히 조건부 처리과정에 대한 법원명령이 일반논의사항 제4호 및 제7호에 포함된 위원회의 지침에 부합하도록 시정행동을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58.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의 일반논의사항 제11호 및 제13호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의사항 제1호를 고려하여, 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 검토는 특히 학교 결석, 병환, 심지어는 학생의 자살까지도 발생시키는 모든 교육수준에서의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의 원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59.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3조 1항, 위원회의 일반논의사항 제13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의사항 제1호에 제시한 바에 따라, 교육

목적과 목표를 반영하는 공정하고 조화로운 방법으로 학교 교과서와 기타 교재가 교육에 활용되도록 요청하였다.

60. 위원회는 모국어 강의를 언어 소수집단에 속하는 상당수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는 공립학교의 정규과정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한국인 학교 등 소수집단 학교가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인가하고, 이에 따라서 보조금이나 기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또한 학교졸업증서를 대학입학시험 자격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하였다.

61.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다음 사항 등에 관한 더욱 광범위한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서 제공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에는 불법근로자 및 도제 등을 포함하는 외국인의 정당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사회보장, 보건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환자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62.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사회계층에 최종평가를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이행을 위한 모든 조치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3차 정기보고서의 작성시 초기 단계에 비정부기구 및 기타 시민사회와 협의하도록 요청하였다.

63.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3차 정기보고서를 200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동 보고서에는 최종평가에 포함된 권고안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하였다.

최종평가에 관한 당사국의 의견 : 일본
2002년11월29일

E/C.12/2002/12.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CESC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제29차 회기 2002년 11월 11일-29일, 제네바

사무국 보고

최종평가에 관한 당사국의 의견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2년 11월 11일-29일 개최된 제29차 회기에서 최종평가를 위원회가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만약 당사국이 최종평가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견은 제출한 그대로 위원회 문건으로서 발행될 것이며, 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참조로 포함된다. 당사국이 제시한 이러한 의견은 정보용으로만 발행될 것이다.
2. 따라서, 이 문건은 일본의 제2차 정기보고서(E/1990/6/Add.21 and Corr.1)를 논의한 후에 제26차 회기(2001년 8월 13-31)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평가(E/C.12/1/Add.67)에 관하여 일본 정부가 2002년 6월 16일에 제출한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1. 일본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2001년 8월 31일에 채택한 최종평가는 사실에 대한 일부 분명한 오해에 기반하고 있으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위원회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2. 첫째, 일본 정부는 최종평가에서 위원회가 오해를 하였거나 사실을 잘못 제시한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규명하였다.

(1) 제11, 21, 34항에서, 위원회는 일본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 제8조 2항을 유보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유보한 것은 제8조 1-d항이다. 또한 제21항에서 일본이 파업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규약 제8조 2항을 위배하였다는 위원회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이는 일본이 제8조 1-d항 규정으로 규제 받지 않는 권리를 유보하였기 때문이다.

(2) 제21항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는 그 용어의 사용이나 협의에서의 논의, 해석으로 판단할 때 파업의 권리에 관련된 사항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일본의 모든 공공근로자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를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3) 제21항 및 제48항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는 파업권의 제한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또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활, 개인 안전, 또는 보건을 위협하게 하는 주요 서비스의 중단"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노동기구의 견해로 볼 때, 주요 서비스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의 파업권은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주장은 옳지 않다.

(4) 제26항 및 제53항에 관하여,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국민과 정부가 285명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리핀과 한국, 대만, 그리고 이러한 정부와 당국이 승인한 관련 기구의 인정을 받았음을 보고서의 논의에서 위원회에게 반복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인도네시아와 네델란드의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이전 종군위안부들이 감사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보상은 관련 여성들이 수용할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는 위원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주로 개인기부에 의한 것이라는 위원회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의 모든 운영비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단지 보상은 일본 국민이 조성한 기

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종군위안부로 알려진 사항을 포함하여 지난 전쟁에 관련된 보상, 재산, 소송에 관하여,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 양자간 평화협정, 기타 관련 협약 및 협의에 따라 의무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가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심각한 모욕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이 기금을 통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과 함께, 종군위안부로 알려진 사안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따라서 그 목적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3. 둘째, 실망스럽게도,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사안목록에 대한 답변과 보고서의 논의시에 설명을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로서, 최종평가에 포함된 권고사항은 사실이나 인과관계를 오해한 기반에서 취해진 것이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다음의 두 가지 전형적인 사례에만 한정을 하려 한다. 그러나 차기 보고서에서 기타 유사한 사례를 논의하거나 인용하려고 생각한다.

(1) 교과서승인체계를 언급한 제59항에 관하여, 일본 정부는 다음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교과서에 관한 중앙정부의 관여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민간 부문의 교과서 저자와 편집자가 교과서승인규칙과 일반 과정표준(학습 과정)에 따라 분명한 잘못이나 불균형과 같은 오류가 있는 교과서만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승인한 교과서 중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택하게 된다. 학습 과정에 기반하여 모든 일본의 교과서는 기본적 인권, 평화주의, 주권의 상호 존중,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 승인은 아시아 인접 국가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검토를 요구하는 교과서 승인규칙에 따라 엄격하고 적합하게 시행된다. 따라서 교과서승인체계는 학교 교과서의 내용이, 인권, 기본적 자유, 상호 이해, 관용, 다양한 집단간의 우정 등의 존중을 요구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3조에 부합하게 된다. 또한 기타 교재는 그들이 학교교육에 도움을 주고 적합한 경우에

학교에서 사용되며, 학교는 그 이용을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이 체계는 각 교육위원회의 관리, 지시, 권고 하에 적절하게 운영된다. 일본에서 교과서는 위와 같은 체계에 의하여 제작되고 승인된다. 그 결과로서 교과서와 기타 교재의 내용은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합하게 된다.

(2) 제27항 및 제28항에 관하여, 일본 정부는 위원회가 정부, 효고현, 고베시, 기타 관련 기관이 의료보호, 피난처 식품, 식수, 기타 필수품을 제공하고 또 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한신-아와지 대지진 피해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였음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역 사회 응급임시주택의 건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입주자는 피해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특별 직원인 생명구조요원(life support member)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집단주택시설을 제공하며, 이 곳에서는 노인들이 외롭지 않게 서로 모여 살게 된다.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역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영구주택으로 집단으로 이동하는 조치를 제공하고, 간호사와 생명구조요원 등이 가정을 방문하기도 한다. 정신건강치료센터를 설립하고 훈련을 시행하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담당 직원을 파견하고 아동 정신치료를 담당하는 학교 선생님을 배치하여 가족을 잃은 피해자에게 특별 지원을 제공하여 왔다. 또한 지진 피해자의 주택용자에 관하여, 정부는 용자금 이자 보조, 상환기간 연장, 용자가 하나 이상(새로운 신청 및 피해 주택의 기존 용자)인 사람에게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주택을 재건하려는 사람을 지원하는 특별 조치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상기에 언급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지진 피해자를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4. 셋째, 일본 정부는 최종평가에 포함된 일부 기본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제10항 및 제33항에 관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보고서 논의시에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각 협약 당사국은 협약 해석에 권한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위원회의 최종평가는 매우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협약의 일부 규정이 직접 적용 가능한가의 여부는 각 사건마다 법원이 판결을 하며, 이 때 관련 협약의 목적, 내용, 용어 등을 고려하게 된다.

(2) 제34항 및 제48항에 관하여, 일본 정부는 유보의 철회 여부는 각 당사국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관심은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유보는 협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적절한 과정에 따라 이루어 졌음을 강조한다.

5. 마지막으로 다음 사항이 위원회의 최종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다.

(1) 제21항 및 제48항에 관하여, 일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는 파업권에 관련된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며, 파업권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표준적용 위원회나 협약 및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공공근로자의 기본 노동권리 제한이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국제노동기구 협약의 해석에 권한이 없는 위원회가 "이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제87호)을 위반한다"라고 언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이에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공공근로자의 파업권과 단체교섭권의 제한은 보상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98호에 부합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주장을 언급하고자 한다,

6.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기타 의견을 첨부하였다.

7. 상기와 같이, 일본 정부는 최종평가를 참조로 활용할 것이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

하여 위원회와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최종 평가 : 프랑스
2001년 11월 30일
E/C.12/1/Add.72. (최종 평가/의견)

협약 약호 : CESC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제27차 회기

2001년 11월 12일-30일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고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최종 평가

프랑스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1년 11월 16일에 열린 동 위원회의 제67차 회의 및 제68차 회의(E/C.12/2001/SR.67 및 68)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E/1990/6/Add.27)의 이행에 대한 프랑스의 제2차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2001년 11월 23일에 열린 제77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관찰 결론을 채택하였다.

가. 서론

2. 동 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지침에 맞추어 준비한 당사국의 제2차 정기 보고서를 환영하는 바이다.

3. 동 위원회는, 협약의 조항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부 관료들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성의있는 보고서를 비롯하여 당사국이 제공한 포괄적인 서면 응답 및 구두 응답에도 감사한다.

다. 긍정적 측면

4. 동 위원회는, 사회적 소외를 막기 위하여 특히 근로에 대한 권리, 주거에 대한 권리 및 보건의에 대한 권리를 목표로 한 1998년 7월 29일 법률 초안을 채택함으로써 당사국 내의 사회적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정부 당국의 최근 노력을 환영한다.

5. 동 위원회는 두 개의 국내인권기구, 즉 국가인권자문위원회(the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f Human Rights(CNCDH)) 및 국가옴부즈맨(the National Ombudsman)을 인정한다.

6. 동 위원회는, 신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그리고 실업자들을 위한 PAP 프로그램 및 청년들을 위한 TRACE 프로그램과 같은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실업자들을 위해 정부 당국이 쏟은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7. 동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기소하기로 한 최근의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8. 동 위원회는, 2000년 중 국가실행계획을 발족하는 등 심각한 국내 폭력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다양한 노력들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9. 동 위원회는 또한,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술과 담배의 남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벌인 캠페인을 높이 평가한다.

10. 동 위원회는, 개인 간의 불법적 거래, 아동 포르노,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을 막기 위해 정부 당국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한다.

11. 동 위원회는, 1999년 7월 27일자 법률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건강 보험의 수혜를 확대하고 빈민층에게 100% 수혜를 제공하는 등,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를 만인에게로 확대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이 이룬 진전을 높이 평가한다.

다. 협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요소 및 난관

12. 동 위원회는, 정부 당국의 영향권 내에서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 및 난관도 없다고 본다.

라. 주요 관심사항

13. 동 위원회는,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는 헌법 조항(제55조)이 있으며 정부 당국이 국제법을 국내 법질서에 통합시키는 일원적 원칙을 채택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판소(예를 들면 최고 행정재판소)는 협약 및 그 조항들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서 협약 및 그 조항과 관련있는 재판의 결정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동 위원회는 또한, 일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재판에 회부될 수 없다는 대표단의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14. 동 위원회는, 공공개발지원(ODA)의 개혁과 함께 GNP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15. 동 위원회는, 프랑스 내의 소수집단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프랑스의 전통은 국가의 일체성과 모든 프랑스 시민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의 일부에서는 만인을 위한 평등권의 존중 및 보호가 서약문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 내에서 모든 개인에

게 평등권이 보장된다는 사실과 법 이전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은 즉, 정부 당국 내에 소수집단이 존재하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그만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동 위원회는 공감한다. 동 위원회는, 법 이전의 평등이 인권의 평등한 향유를 항상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어떤 나라에서 특정 소수 단체가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16. 동 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여성의 결혼 최소연령(15세)이 남성의 결혼 최소연령(18세)에 비해 낮게 규정된 시민법을 아직도 수정하지 않은데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평균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순은 결혼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 대표단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우려할 만하다.

17. 동 위원회는, 경제 상황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계약 고용 및 실직 등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고용이 늘어나고 이것이 근로 연령층의 자살률을 높인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18. 동 위원회는, 단체 교섭 등과 같은 특정 절차에서 노조의 참여를 위한 "대표성"의 기준이, 더 큰 규모의 노조나 기반을 잡은 노조를 선호함으로써 보다 소규모이거나 신설된 노조를 배제시킬 수도 있으며 따라서 협약의 제8조 (다)항에 따라 모든 노조가 자유롭게 기능할 수 있는 권리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19. 동 위원회는, 1962년의 사회정책(기본적 목표 및 기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17호와 1993년의 주요산업 재해예방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74호에 대해 정부 당국이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 동 위원회는, 정부 당국 내에서 특히 농촌 지역 내의 무주택자들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 동 위원회는 또한, 무주택자의 감소 및 예방에 목표를 둔 정

부정책이 부적절하다는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마. 제안 및 권고사항

21. 동 위원회는, 당사국 제3차 정기 보고서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사회적 소외를 타개하기 위한 기초적 법률의 이행 성과, 국내의 폭력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국가실행계획의 성과, 그리고 술과 담배의 남용 방지를 위한 캠페인의 성과 등이다.

22. 동 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불법적 인신매매를 법률로 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3. 동 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판사, 검사, 그리고 협약의 이행 및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책임지는 여타 공무원들에게적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판 정에서 이러한 권리가 지속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4. 동 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GNP 대비 ODA의 비율을 유엔이 정한 0.7% 목표까지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을 권고한다.

25. 동 위원회는, 당사국이 소수집단을 고려하여 정부 당국의 입장을 재고해 주기를 권고하며, 소수집단이 정부 당국 내에서 존재할 권리를 가지며 보호 되도록 보장해 줄 것을 권고한다. 동 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제27조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의 조건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며, 정부 당국이 지역언어 및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 뿐만 아니라 국가의 소수집단 보호를 위한 유럽 기초협약의 위원회(the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를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26. 동 위원회는 또한, 정부 당국이 지역의 문화 및 언어와 소수집단의 문화 및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이러한 언어에 대한

교육과 이러한 언어로 교육하는 것을 개선시키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한다.

27. 동 위원회는, 여성의 법적 결혼 최소연령을 18세로 조정해 주기를 권고한다.

28. 동 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동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3차 정기 보고서에는 근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자살자의 수를 줄이고 자살자의 가정에 대한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문제로 다루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29. 동 위원회는, 참여 기준 및 "대표성"의 조건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협약의 제8조 (다)항에 의거하여 노조의 규모에 상관없이 단체협상 등의 과정에 노조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이 보장을 해 줄 것을 권고한다.

30. 동 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사회정책(기본적 목표 및 기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17호와 주요산업 재해예방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74호에 비준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31. 동 위원회는, 특히 동절기에 무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현재에도 시행하고 있는 캠페인 외에도, 정부 당국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문제를 단지 위급한 문제로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32. 동 위원회는, 프랑스가 세계금융기구의 회원으로서, 특히 IMF 및 세계은행의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기구들의 정책 및 결정이 협약에 조인한 정부 당

국들의 의무, 특히 국제 원조 및 협력과 관련한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명시된 의무와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3. 동 위원회는, 지금의 최종 평가를 모든 계층의 사회, 특히 정부 공무원 및 재판관들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하며, 차기 정기 보고서에서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한 정보를 동 위원회 측에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한다. 동 위원회는 또한, 정부 당국이 제3차 정기 보고서의 준비과정에서 비정부기구 및 여타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연계하기를 촉구한다.

34. 마지막으로 동 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2006년 6월 30일까지 제3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바라며, 동 보고서에는 정부가 현재의 최종 평가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 호주
1993년 6월 3일

E/C.12/1993/9.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 CESCR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고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호주

1. 위원회는 제13조에서 제15조(E/1990/7/Add.13)에 대한 호주의 제2차 정기 보고서를 1993년 5월 24일, 25일, 및 28일에 열린 제13차, 제15차 및 제20차 회의(E/C.12/1993/SR. 13, 15 및 20)에서 검토하고, 1993년 5월 28일의 제20차 회의(제8차 회기)에서 다음의 최종평가를 채택하였다.

가. 서론

2. 위원회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를 토론할 대표단을 보내준 호주 정부에 사의를 표한다. 동 보고서는 협약에 따른 호주 정부의 의무사항의 중요성을 말하는 하나의 지표이다.

3. 위원회는 훌륭한 서면 보고서와 호주의 협약상 의무 이행을 위원회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한 질의에 대한 추가 서면 보고 및 구두 답변에 각별히 감사를 표한다.

나.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호주의 연방 구조 안에서 협약의 교육관련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확립에 노력한 점에 각별히 만족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섬의 주민, 소녀, 장애인 및 소수 집단을 포함하여, 호주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집단에 대한 교육 규정의 불 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여러 조치와 대책에도 각별히 만족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교육 관련 문제에 많은 연구, 검토를 착수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고 그 연구의 결과가 교육 정책이나 국가실

행계획 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정책개발의 중요성과 교수 및 학습의 질에 관한 국가 프로젝트에서 교사의 중요성, 및 교과 개발에서 인권 교육 관련 정책의 중요한 발전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교육정책의 목표 달성 진행을 감시할 수 있는 적합한 지표를 개발한 것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호주에서 인종적·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다중문화 진작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에 고무되었다.

다. 협약 이행의 장애 요인

6. 위원회는 호주의 연방제에 기인한 교육관련 법률의 상이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가 교육 부문에서 몇몇 집단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 했다는 데 주목한다. 위원회는 특히, 사회 경제적 요인과 고립된 일부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섬주민 부락이 협약 이행에 주요 장애가 되고 있다고 명기한다. .

7. 위원회는 일부 호주 원주민 부락이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재원도 한정되어 앞으로의 문화적 발전과 국제 협약에 주요 장애가 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라. 관심사항

8. 위원회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 제도상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지위를 고려한다. 위원회는 장애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면에서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섬주민의 지위와 동시에 대다수가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이 집단의 성인 문맹 문제를 특히 우려를 표한다.

9. 위원회는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부족에도 우려가 된다.

10. 위원회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립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도 같은 재정 지원을 하는 효과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11.협약 제15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섬주민이 그들의 문화적인 전승을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부족하였다는데 각별한 우려를 표명한다.

12. 위원회는 보고서 310항에서 언급한 특정 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는 연방 관세 규정에 우려를 표한다. 이 규정을 실제 적용하면 예술 창조와 공연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제안 및 권고사항

13. 위원회는 호주의 연방제와 관련해서, 협약 제13조와 제15조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와 기관간의 긴밀한 조정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4. 위원회는 호주 연방 전체에서 사회적 상황, 장애인과 기타 집단의 서로 다른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활동을 펼칠 것을 제의한다. 취약집단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식 및 비공식 교과에서 앞으로 인권 교육 부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5.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그 작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위원회가 보고서 검토 후 내놓는 요약본이나 최종평가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6. 위원회는 협약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의 조항에서 다루는 권리의 이행 결과를 평가할 지표개발에 각별히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정부는 이 분야의 성과와 결과를 차기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덧붙여, 위원회는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섬주민과 기타 불이익 집단의 일반적 상황, 특히 교육과 문화 상황을 더 면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호주 정부의 협약 이행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17. 위원회는 정부가 불이익 집단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와 같은 집단의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을 통한 검토와 연구 결과를 이끌어 내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도 타당하였다. 위원회는 장애인과 노령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러므로 협약 제13조에서 제15조에서 다루고 있는 권리와 관련 있는 이런 집단의 요구를 시정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8. 위원회는 정부가 공적으로 책임지고 교육 균등을 이행하겠다는 언급에 감사를 표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교육 시설의 균등한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권고한다.

19. 위원회는 협약 제13조에서 제15조의 이행에 대한 차기 정부 보고서에 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 사이에 교육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를 바란다.

20. 위원회는 호주 원주민 예술가에게 그들의 원주민 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전시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조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 호주
2000년 9월 1일

E/C.12/1/Add.50. (최종평가의견)

협약 약호 : CESC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한 당사국 제출 보고서 고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평가

호주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E/199/104/Add.21)의 이행에 관한 호주의 제3차 보고서를 2000년 8월 24일과 25일에 열린 제45차, 제46차, 및 제47차 회의에서 검토하고, 2000년 8월 31일에 열린 제55차 회의에서 다음의 최종평가를 채택하였다.

가. 서론

2. 위원회는 위원회가 규정한 개정 보고 지침에 따라 작성한 호주의 제3차 보고서 제출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를 기일을 앞당겨 제출해 준 당사국의 준비에 사의를 표하는 바, 이는 위원회에 협조하겠다는 당사국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3. 위원회는 정부 대표단과 위원회 위원간에 나눈 건설적인 대화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부 보고서 검토를 예기치 않게 앞당기게 된 관계로 질의 목록에 대한 서면 답변을 논의 전에 위원회 위원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한 곳이 유감이다. .

나.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호주 시민이 높은 생활 수준을 향유하고,

국가가 이런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점을 인정한다. 이것은 호주가 2000년 UNDP인간 개발 지표에서 4위에 오른 것으로 사실임이 입증된다.

5. 위원회는 호주가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정부의 서비스 특히, 호주 근로자 대다수의 소득세 경감을 목적으로 2000년 7월부터 시작하는 상품 및 서비스 세법 시행을 주목한다.

6. 위원회는 최근의 아시아 금융 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호주에 찬사를 보낸다.

7. 위원회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동티모르에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점에 감사를 표한다.

8. 위원회는 1999년 8월에 의회가 호주의 원주민 화해가 중요한 국가적 우선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주목하며, 또한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과거의 정책에 "심심한 유감" 임을 밝힌다. 위원회는 또한 2000년 5월에 호주 원주민 화해위원회가 호주 원주민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개발을 목적으로 화해 문서를 작성하자는 최종 제의를 호주 국민에게 보낸 것에 주목한다.

9. 위원회는 정부가 원주민 관계사업을 우선하여 2조 3천억 호주 달러를 배정한 것을 주목한다.

10. 위원회는 원주민이 문화적으로 적합한 보건 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하고 원주민의 일반적인 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재원을 할당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통해 정부와 원주민 공동체간의 제휴관계 수립을 환영한다.

11. 위원회는 고용 부문에 남녀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 채용되는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12. 위원회는 정부가 가정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한 것을 환영하며, 그 중에는 "가정 폭력 반대 결연" "농촌 및 오지 가정 폭력 대책" "성차별과 폭력 근절 사업" 및 "위기 지출" 등이 있다.

다. 협약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와 난관

13. 국내법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고유한 보장책이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협약의 법적 지위가 일관성이 없으므로, 협약 규정의 전면적인 인정과 적용이 급선무이다. .

라. 관심사항

14. 위원회는 협약이 국내법 체계에서 법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의 규정을 들어 법정에 호소할 수 없음이 유감이다.

15. 위원회는 정부의 노력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호주 원주민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향유에 있어서 특히, 고용, 주택,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 비교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16. 위원회는 국가와 원주민 간에 화해 절차로 영향을 준 1993년 원주민지위법에 대한 개정 법률이 퇴보되었다고 보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 개정 법률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17. 위원회는 1996년의 직장관계법이, 사용인이 단체교섭보다 개인 교섭을 선호하게 함으로서 호주 산업관계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는 점을 주시한다. 위원회는 또한 임금, 직업 안정 및 임시고용관계법에 있는 제약사항에도 우려를 표한다.

18. 위원회는 가내 근로자에 우려를 보였는데, 그들은 주로 여성이고, 어떤 형태의 사회적 보호도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최소 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어 가족의 일상 생활비를 벌려고 과도하게 긴 시간의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19. 위원회는 법률이나 단체 근로 협약에서 여성 유급 육아 휴가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국가가 모성 보호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03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0. 위원회는 호주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빈곤층이 없다는 이유로 그 문제를 위원회가 검토할 수 없게 봉쇄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빈곤을 완화하려는 노력에 국가가 시간을 넘겨서 그런 진척을 이룬 것이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21. 위원회는 현행 1967년 주택임대차법(뉴사우스웨일즈)이 임차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장 규정이 없으며 자의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에 대한 보호 규정이 미비하므로 결과적으로 시드니에서는 특히 다가오는 올림픽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으며 강제퇴거 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22. 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의료 제도로 보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특히 수술의 경우-는 아직도 충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23. 위원회는 공식 및 비공식 교과에서 인권 교육 강화 권고에 대한 대응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나아가 국가가 사립 및 공립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나, 공립 및 사립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수 및 학습의 질적 차이에 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마. 제안 및 권고사항

24. 위원회는 협약 조항이 국내 법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약을 국내법 체계에 편입시킬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 점에서, 연방 법률과 주 법률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위원회는 협약 비준 후에 발생하는 "유권 해석"에 관해서는 최고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을 장려한다.

25. 위원회는 정부가 호주 원주민과 화해를 추구하고 있는 점과 그들의 불리한 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장려한다.

26. 위원회는 정부가 직업 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을 확보,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취약집단, 이를테면 기간직 계약 근로자, 임시직 및 자유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한다.

27. 위원회는 정부가 가내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최저 임금을 보장하며, 적절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법률에 따른 근로 조건을 향유할 수 있는 대책 시행을 강력히 권고한다.

28. 위원회는 정부가 여성 유급 육아 휴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모성 보호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03호를 비준하기를 권고한다.

29. 위원회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에 의거하여, 필수 서비스에서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해서, 국가 기관의 기능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을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30. 위원회는 정부가 사립 교도소에서의 근로가 자발적인 것이 되고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31. 위원회는 정부가 제4차 정기 보고서에 실업 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요청한다.
32. 위원회는 신규 이민자가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 받지 않도록 사회보장지원을 수령하는 대기 기간 2년을 정부가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33. 위원회는 호주의 빈곤층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정부가 빈곤의 수준을 확정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4. 위원회는 자의적인 임대료 인상과 임차인이 이유없이 강제퇴거 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정부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주택 정책을 개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덧붙여, 위원회는 정부가 모든 주 정부 및 준주 정부가 적절한 주택 정책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35. 위원회는 국가가 인권 교육을 초등 및 중등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하며 제4차 정기보고에서 이에 대해 실시한 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6. 위원회는 정부가 연령별, 성별, 소수집단별 근로의 권리에 대해,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근로 조건, 사회 보장, 주택, 보건 및 교육별로 분류한 통계자료를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제4차 정기 보고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37.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정부가 본 최종평가를 전국에 널리 보급하기를 요청하며, 2005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기로 예정된 제4차 정기 보고서에는 본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행한 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